



2012 계약심사 사례집

목차

CONTENTS

I. 계약심사제도 운영	3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5
2. 계약심사제도 운영근거	5
3. 계약심사부서의 기능 및 역할	5
4. 심사대상 기관 및 범위	6
5. 심사제외 대상사업	6
6. 계약심사 흐름도 및 업무처리 절차	7
※ 계약심사제외 대상사업(규칙 제4조 관련)	8
II. 계약심사 운영성과	9
1. 추진경과	11
2. 추진실적(도 심사대상)	11
※ 연도별 시군(자체) 계약심사 실적 및 절감 현황	14
I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19
1. 토목공사	21
2. 건축공사	39
3. 기계·전기·통신·소방공사	61
4. 용역	87
5. 물품구매·제조	97
6. 시·군 심사사례	105
IV. 부 록	129
1.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131
2. 예정가격 작성요령	143
3.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181
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190
5.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208
6. 공사용 자재 직접(분리) 구매 제도	235
7. 도내 공사용 자재생산업체 현황	253
8. 계약심사 관련 추천 사이트	262

I

계약심사제도 운영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2. 계약심사제도 운영근거
 3. 계약심사부서의 기능 및 역할
 4. 심사대상 기관 및 범위
 5. 심사제외 대상사업
 6. 계약심사 흐름도 및 업무처리 절차
- ※ 계약심사제외 대상사업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위하여 도, 공공기관, 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 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로서
 - 원가계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 목적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계약심사제도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2012. 3. 22)
- 「전라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2008. 10. 10)

3 계약심사부서의 기능 및 역할

- 예정가격 결정 前 단계에서 원가산정 내용의 적정성 심사
 - 설계도서간 불일치사항, 물량 적정 산출 여부
 - 원가계산 방식, 제경비 요율,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 견적가, 가격정보지 등), 노임의 적정성
 - 부적정 또는 과다 계상된 부분은 절감하되, 발주금액의 과소 책정으로 부실공사 예상시 적정금액으로 조정
 - 기타 각종 대가기준 반영여부 및 중복부분 중점 심사
-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
 - 증감금액 기준은 ES증가분을 제외한 금액

4 심사대상 기관 및 범위

구 분	대상기관	심사내용	대 상 사 업
도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전남개발공사, 출연기관(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¹⁾ 사업, 시군 사업(국비 또는 도비보조 사업에 한함)	원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전문공사 3억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심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시·군	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공기업사업, 출연기관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사업	원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 추정금액 3억원(최저 25백만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최저 20백만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최저 5백만원) 이상
		설계변경심사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자재대 + 부가가치세

시군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시군에 따라 사업범위를 달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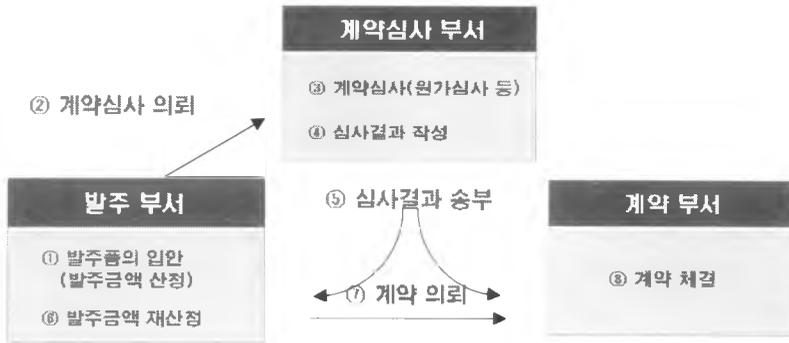
5 심사제외 대상사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와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 협상에 의한 계약, 개산계약, 일괄입찰, 공모제안사업 등
-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할 여유가 없는 사업
 - 일반적인 재해복구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심사하며, 그 처리기간이 10일 내에 가능하므로 심사제외대상이 아님
-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예)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 그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1) 전라남도 출연기관 종류(16개 기관) :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전남발전연구원, 테크노파크, 생물산업진흥재단,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센터, 인재육성재단, 남도장학회, 명량대첩기념사업회, 문화산업진흥원, 문화예술재단, 여성플라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6 계약심사 흐름도 및 업무처리 절차 (처리기간 10일 → 단축 5일)

○ 흐름도



○ 업무처리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 발주부서 → 회계과(계약심사담당)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제출서류 확인,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회계과→발주부서)
③ 심 사	▫ 원가 심사,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 등 심사 실시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회계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 관리	▫ 회계과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계약심사제외 대상사업

연번	분야	사 업 명	심사제외 사유	비고
1	용역	· 행사 용역	출연자 및 홍보매체에 따라 가격 상이	
2	용역	· 디자인 개발	창작 및 예술품 거래실례가격 적용 곤란	
3	용역	· 지적측량 수수료	조정률이 낮아 심사실익 없음 (국토해양부 예규 규정)	
4	용역	· 감정평가 수수료	조정률이 낮아 심사실익 없음 (국토해양부 예규 규정)	
5	용역	· 감리용역 대가 (농어촌공사 위탁)	조정률이 낮아 심사실익 없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규정)	
6	물품	· 소방헬기 및 부품구매	해외 특정 제작사 제품으로 심사 곤란	
7	물품	· 유류(가스) 구매	한국석유공사에서 매주 가격 고시	
8	물품	· 농·축·수산물 구매 (식재료 포함)	농축수산물은 거래실례가격 적용 곤란	
9	물품	· 동물 구매	동물은 거래실례가격 적용 곤란	
10	물품	· 예술공연용 의상 및 무대 시설 제작	예술창작품은 거래실례가격 적용 곤란	
11	물품	· 상품권, 종량제 봉투, 예술품 구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12	물품	· 시험연구용 원자재 (귀금속 등) 구매	주기적 국제시세 반영 및 환율 적용으로 심사 곤란	

II

계약심사 운영성과

1. 추진경과

2. 추진실적(도 심사대상)

(총괄, 연도별, 사업분야별, 기관별)

※ 연도별 시군(자치) 계약심사 실적 및 절감 현황

1 추진경과

- 2008. 7. 15 계약심사 기구 설치(2개 담당, 9명)
- 2008. 9. 1 계약심사 업무 시행
- 2008. 10. 10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제정
- 2008. 12. 26 원가분석자문단 구성·운영
- 2010. 1. 1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자문단 운영(확대)
- 2010. 7. 1 시·군 자체사업 계약심사 시행

2 추진실적(도 심사대상)

가. 총괄

【 총 3,054건 / 50,445억원 심사 / 3,970억원 절감(△7.9%) 】

- ◇ 절감액 분석 : 공사 3,518억원 > 용역 403억원 > 물품 49억원 順
- ◇ 절감률 비교 : 공사 7.9% > 물품 7.7% > 용역 7.3% 順
- ◇ 기관별 처리량 : 시군 2,348건 > 도 본청 558건 > 공기업 148건 順
- ◇ 평균 처리기간 : 물품 3일 > 용역 4일 > 공사 5일 順

나. 연도별 심사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심사건수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절감률	비고
계	3,054	5,044,564	4,647,560	397,004	7.9%	
2012. 1~6	485	810,951	743,791	67,160	8.3	
2011.1~12	958	1,445,490	1,334,175	111,315	7.7	
2010.1~12	802	1,232,986	1,145,220	87,766	7.1	
2009.1~12	603	1,192,892	1,091,595	101,297	8.5	
2008.9~12	206	362,245	332,779	29,466	8.1	

다. 사업분야별 심사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절감률	비고
합 계		3,054	5,044,564	4,647,560	397,004	7.9%	
공 사	소 계	1,967	4,426,359	4,074,566	351,793	7.9	
	2012	268	719,527	659,392	60,135	8.4	
	2011	593	1,259,444	1,163,019	96,425	7.7	
	2010	547	1,049,875	973,555	76,320	7.3	
	2009	419	1,075,579	983,122	92,457	8.6	
	2008	140	321,934	295,478	26,456	8.2	
용 역	소 계	629	554,169	513,912	40,257	7.3	
	2012	110	78,678	72,371	6,307	8.0	
	2011	193	160,115	147,096	13,019	8.1	
	2010	171	172,526	161,676	10,850	6.3	
	2009	112	105,060	97,513	7,547	7.2	
	2008	43	37,790	35,256	2,534	6.7	
물 품	소 계	458	64,036	59,082	4,954	7.7	
	2012	107	12,746	12,028	718	5.6	
	2011	172	25,931	24,060	1,871	7.2	
	2010	84	10,585	9,989	596	5.6	
	2009	72	12,253	10,960	1,293	10.6	
	2008	23	2,521	2,045	476	18.9	

라. 기관별 심사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절감률	비고
합 계	3,054	5,044,564	4,647,560	397,004	7.9%	
도	소 계	558	804,730	757,629	47,101	5.8
	2012	109	162,586	154,226	8,360	5.1
	2011	141	171,833	163,630	8,203	4.8
	2010	135	249,976	237,743	12,233	4.9
	2009	131	198,660	181,058	17,602	8.9
	2008	42	21,675	20,972	703	3.2
시 군	소 계	2,348	3,972,520	3,643,970	328,550	8.3
	2012	358	605,586	551,482	54,104	8.9
	2011	778	1,210,949	1,113,123	97,826	8.1
	2010	622	890,507	821,760	68,747	7.7
	2009	437	931,654	852,231	79,423	8.5
	2008	153	333,824	305,374	28,450	8.5
공 기 업	소 계	148	267,314	245,961	21,353	8.0
	2012	18	42,779	38,083	4,696	11.0
	2011	39	62,708	57,422	5,286	8.4
	2010	45	92,503	85,717	6,786	7.3
	2009	35	62,578	58,306	4,272	6.8
	2008	11	6,746	6,433	313	1.3

참고자료 연도별 시군(자체) 계약심사 실적 및 절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1.1~6.30)					2011년(1.1~12.31)					2010년(7.1~12.31)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계	2,047	612,212	583,778	28,434	4.64	2,855	735,000	699,321	35,679	4.85	607	144,523	139,413	5,110	3.54
목 포	37	20,050	19,217	833	4.15	49	16,201	15,052	1,149	7.09	14	3,043	2,841	202	7.00
여 수	184	73,593	71,496	2,097	2.85	225	99,214	96,736	2,478	2.49	21	13,358	13,074	284	2.12
순 천	287	117,151	108,670	8,481	7.24	399	64,773	59,681	5,092	7.86	56	12,165	11,530	635	5.22
나 주	123	27,148	25,658	1,490	5.48	111	29,104	26,961	2,143	7.35	11	3,517	2,831	686	19.4
광 양	301	106,952	103,776	3,176	2.93	481	132,245	126,170	6,075	4.59	178	40,387	39,800	587	1.45
담 양	71	20,172	19,512	660	3.27	97	15,927	15,300	627	3.94	25	8,533	8,153	380	4.45
곡 성	37	9,819	9,439	380	3.87	48	10,851	9,894	957	8.82	-	-	-	-	-
구 례	20	7,945	7,669	276	3.46	37	15,754	15,320	434	2.86	17	5,783	5,696	87	1.5
고 흥	261	34,542	33,176	1,366	3.95	500	70,260	67,259	3,001	4.27	137	7,958	7,628	330	4.16
보 성	21	8,053	7,690	363	4.51	39	9,978	9,589	389	3.90	4	1,348	1,268	80	5.93
화 순	95	24,106	22,473	1,633	6.77	59	28,120	26,114	2,006	7.13	-	-	-	-	-
장 흥	32	12,419	12,295	124	1.00	40	12,843	12,510	333	2.59	5	2,482	2,443	39	1.57
강 진	74	20,926	19,891	1,035	4.90	103	37,351	35,474	1,877	5.02	36	17,924	17,416	508	2.80
해 남	47	13,669	12,547	1,122	8.21	70	24,081	21,752	2,329	9.69	10	1,761	1,678	83	4.72
영 암	25	10,182	9,303	879	8.63	51	31,387	30,102	1,285	4.09	6	943	859	84	8.91
무 안	31	7,473	7,022	451	6.02	35	9,634	9,256	378	3.92	8	1,854	1,803	51	2.75
함 평	35	8,211	8,119	92	1.12	40	15,020	14,739	281	1.87	10	2,958	2,769	189	6.39
영 광	26	9,555	8,941	614	6.42	62	26,984	26,411	573	2.12	13	9,238	8,973	265	2.87
장 성	50	9,143	8,606	537	5.87	53	9,765	9,340	425	4.35	20	4,276	4,232	44	1.03
완 도	176	32,029	30,716	1,313	4.10	232	41,193	39,130	2,063	5.01	36	6,995	6,419	576	8.23
진 도	52	14,672	13,899	773	5.26	37	11,971	11,355	616	5.14	-	-	-	-	-
신 안	62	24,402	23,663	739	3.02	87	22,344	21,176	1,168	5.23	-	-	-	-	-

1 공사분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1.1~6.30)					2011년(1.1~12.31)					2010년(7.1~12.31)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계	1,247	524,912	500,931	23,981	4.57	1,683	595,378	568,174	27,204	4.57	299	114,186	110,343	3,843	3.37
목 포	13	13,201	12,636	565	4.28	16	10,837	9,927	910	8.40	8	2,813	2,657	156	6.00
여 수	98	63,643	61,658	1,985	3.12	125	80,105	78,509	1,596	1.99	8	11,512	11,296	216	1.87
순 천	234	104,902	96,827	8,075	7.70	340	54,096	49,586	4,510	8.34	38	8,309	8,031	278	3.35
나 주	70	21,063	20,077	986	4.68	48	19,532	18,462	1,070	7.39	5	1,588	1,085	503	3.16
광 양	191	98,697	95,617	3,080	3.12	262	104,426	98,841	5,585	5.35	91	32,559	32,034	525	1.61
담 양	16	13,587	13,201	386	2.84	28	11,910	11,535	375	3.15	7	3,998	3,723	275	6.88
곡 성	23	8,668	8,380	288	3.32	33	7,361	6,932	429	5.83	-	-	-	-	-
구 례	10	6,979	6,734	245	3.50	22	13,154	12,846	308	2.32	10	4,795	4,736	59	1.19
고 흥	141	29,811	28,834	977	3.27	287	64,471	61,913	2,558	3.96	41	5,710	5,493	217	3.80
보 성	15	7,115	6,791	324	4.55	24	8,268	8,027	241	2.91	2	332	310	22	6.63
화 순	74	20,304	19,069	1,235	6.08	37	21,815	20,433	1,382	6.34	-	-	-	-	-
장 흥	19	10,680	10,625	55	0.51	19	10,166	10,013	153	1.51	2	2,121	2,111	10	0.47
강 진	23	13,709	13,241	468	3.41	41	33,614	32,140	1,474	4.38	29	17,583	17,087	496	2.81
해 남	30	12,179	11,293	886	7.28	30	16,715	15,508	1,207	7.22	2	510	485	25	4.91
영 암	13	8,767	8,212	555	6.33	28	25,658	24,632	1,026	4.0	2	701	635	66	9.41
무 안	21	6,324	5,968	356	5.63	26	7,334	7,131	203	2.77	3	1,594	1,558	36	2.26
함 평	17	6,367	6,313	54	0.85	18	11,836	11,608	228	1.93	3	1,592	1,445	147	9.23
영 광	18	7,781	7,231	550	7.07	41	23,877	23,397	480	2.01	12	9,177	8,923	254	2.77
장 성	29	7,472	7,057	415	5.55	30	7,555	7,246	309	4.09	11	3,227	3,183	44	1.36
완 도	106	28,551	27,349	1,202	4.21	144	34,614	32,849	1,765	5.10	25	6,065	5,551	514	8.47
진 도	40	13,122	12,469	653	4.97	25	9,460	8,956	504	5.32	-	-	-	-	-
신 안	46	21,990	21,349	641	2.91	59	18,574	17,683	891	4.80	-	-	-	-	-

2 용역분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1.1~6.30)					2011년(1.1~12.31)					2010년(7.1~12.31)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계	329	60,330	56,872	3,458	5.73	537	110,064	103,260	6,804	6.18	127	25,055	24,087	968	3.86
목 포	12	5,646	5,400	246	4.35	15	2,908	2,757	151	5.19	-	-	-	-	-
여 수	32	4,414	4,359	55	1.26	54	15,700	15,052	648	4.12	6	1,143	1,103	40	3.49
순 천	36	11,271	10,870	401	3.55	41	8,470	7,920	550	6.49	15	3,621	3,270	351	9.69
나 주	30	4,842	4,390	452	9.30	36	7,657	6,716	941	12.3	4	1,824	1,648	176	9.60
광 양	50	4,627	4,538	89	1.92	116	23,848	23,386	462	1.94	45	6,459	6,433	26	0.40
담 양	8	5,481	5,237	244	4.45	10	2,822	2,640	182	6.45	6	4,295	4,197	98	2.28
곡 성	12	1,053	1,008	45	4.27	11	2,313	2,144	169	7.31	-	-	-	-	-
구 례	3	315	305	10	2.78	11	2,255	2,141	114	5.05	5	709	691	18	2.57
고 흥	16	2,367	2,270	97	4.09	19	2,091	1,938	153	7.31	7	841	822	19	2.26
보 성	6	938	899	39	4.16	12	1,581	1,438	143	9.04	2	1,016	958	58	5.71
화 순	13	3,196	2,857	339	10.6	15	5,502	4,979	523	9.50	-	-	-	-	-
장 흥	9	1,231	1,169	62	5.04	14	1,971	1,822	149	7.56	1	174	165	9	5.17
강 진	25	4,931	4,448	483	9.70	30	2,619	2,224	395	15.0	5	306	296	10	3.20
해 남	1	198	70	128	64.6	22	5,551	4,560	991	17.9	5	1,148	1,096	52	4.56
영 암	7	1,141	828	313	27.4	13	4,763	4,552	211	4.43	1	143	143	-	-
무 안	4	714	668	46	6.44	7	2,235	2,062	173	7.74	1	109	109	-	-
함 평	4	489	457	32	6.54	15	2,420	2,367	53	2.19	7	1,366	1,324	42	3.07
영 광	8	1,774	1,710	64	3.60	19	2,958	2,874	84	2.84	1	61	50	11	18.0
장 성	20	1,371	1,280	91	6.63	22	2,195	2,079	116	5.28	9	1,049	1,049	-	-
완 도	12	1,477	1,423	54	3.72	25	4,348	4,122	226	5.20	7	791	733	58	7.33
진 도	12	1,550	1,430	120	7.70	9	2,407	2,298	109	4.54	-	-	-	-	-
신 안	9	1,304	1,256	48	3.63	21	3,450	3,189	261	7.56	-	-	-	-	-

③ 물품 구매·제조분야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1.1~6.30)					2011년(1.1~12.31)					2010년(7.1~12.31)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심사 건수	요청 금액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
계	471	26,970	25,975	995	3.69	635	29,558	27,887	1,671	5.65	181	5,282	4,983	299	5.66
목포	12	1,203	1,181	22	1.83	18	2,456	2,368	88	3.58	6	230	184	46	20.0
여수	54	5,536	5,479	57	1.04	46	3,409	3,175	234	6.86	7	703	675	28	3.98
순천	17	978	973	5	0.51	18	2,207	2,175	32	1.45	3	235	229	6	2.54
나주	23	1,243	1,191	52	4.23	27	1,915	1,783	132	6.90	2	105	98	7	6.67
광양	60	3,628	3,621	7	0.19	103	3,971	3,943	28	0.71	42	1,369	1,333	36	2.63
담양	47	1,104	1,074	30	2.72	59	1,195	1,125	70	5.86	12	240	233	7	2.92
곡성	2	98	51	47	47.9	4	1,177	818	359	30.5	-	-	-	-	-
구례	7	651	630	21	3.24	4	345	333	12	3.44	2	279	269	10	3.58
고흥	104	2,364	2,072	292	12.35	194	3,698	3,408	290	7.84	89	1,407	1,313	94	6.68
보성	-	-	-	-	-	3	129	124	5	3.88	-	-	-	-	-
화순	8	606	547	59	9.74	7	803	702	101	12.6	-	-	-	-	-
장흥	4	508	501	7	1.38	7	706	675	31	4.39	2	187	167	20	10.7
강진	26	2,286	2,202	84	3.60	32	1,118	1,110	8	0.70	2	35	33	2	5.70
해남	16	1,292	1,184	108	8.36	18	1,815	1,684	131	7.21	3	103	97	6	5.63
영암	5	274	263	11	4.01	10	966	918	48	4.97	3	99	81	18	18.2
무안	6	435	386	49	11.0	2	65	63	2	3.08	4	151	136	15	9.93
함평	14	1,355	1,349	6	0.44	7	764	764	-	-	-	-	-	-	-
영광	-	-	-	-	-	2	149	140	9	6.04	-	-	-	-	-
장성	1	300	269	31	10.3	1	15	15	-	-	-	-	-	-	-
완도	58	2,001	1,944	57	2.85	63	2,231	2,159	72	3.23	4	139	135	4	2.88
진도	-	-	-	-	-	3	104	101	3	2.88	-	-	-	-	-
신안	7	1,108	1,058	50	4.46	7	320	304	16	4.87	-	-	-	-	-

Ⅲ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1. 토목공사
2. 건축공사
3. 기계·전기·통신·소방공사
4. 용역
5. 물품구매·제조
6. 시·군 심사사례

토 목 공 사

【 토목공사 】

-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 ○○길 조성사업
- ○○소하천 정비사업
- ○○지구 연안정비 사업
- ○○마을 조성사업
- ○○체험마을 조성사업
- ○○천 하도준설사업
-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
- ○○구조물 철거공사
- ○○지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 ○○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생태하천 복원사업
- ○○하수관거 정비사업



[토목공사]

○○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사업개요

- 심사기관 : ○ ○ 군
- 심사일자 : 2012. 1.
- 사업규모
 - 목 적 :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 규 모 : 우수공(BF 121본), 가스포집관(492m) 등

심사결과

	⇒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1,383,921		1,173,294	210,627
			절감률
			15.2%

주요 심사내용

- 폐기물선별 물량 오류 정정
 - 1식 견적 단가 → 세부내역 산출 및 단가적용
-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 운반비 조정
 - 실 운반거리(L=20km → 16km) 적용
- 법면보호공 조정
 - 줄때 식재 → 거적덮기 적용
- 순성토 운반거리 조정
 - 실 운반거리(L=7.8Km → 4.9Km) 적용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및 실 운반거리 산정 검토
- 현장여건 등 과다설계 검토

[토목공사]

○○길 조성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시
- 심 사 일 : 2012. 2.
- 사업규모
 - 목 적 : 시내 옛길 명소화사업
 - 규 모 : 휴게테크, 안내간판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659,410		550,180	109,230	16.6%

주요 심사내용

- 테크상부 설치품 조정
 - 잡철물 제작 설치 → 부대철골 가공설치품 적용
- 콩자갈 박기 수량 오류 조정
 - 과다 계상된 콩자갈 82kg/m² → 16.4kg/m²(△65.6kg/m²)
- 조경석 쌓기품 조정
 - 2012년 개정된 전석 쌓기 품(석공 0.14인) 적용

심사 착안사항

- 현지여건에 맞는 설치 품 조정 검토
- 과다설계·계상된 내역 검토

[토목공사]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개요

- 심사기관 : ○ ○ 군
- 심사일자 : 2012. 2.
- 사업규모
 - 목 적 : 지역 소하천 정비사업
 - 규 모 : 소하천정비 L=0.65km(전석쌓기 3,785m²)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137,560		986,770	150,790	13.3%

주요 심사내용

- 법면보호공 조정
 - 줄떼, 평떼 식재 → 거적덮기 적용
- 철근가공 및 조립품 조정
 - 철근 현장가공 → 공장가공 적용
- 레미콘 소운반품 조정
 - 현장 차량 진입 가능하여 삭감
- 과다 계상된 관정개발(소형)품 조정
 - 견적단가(중형) → 견적단가(소형) 적용

심사 착안사항

- 현지여건을 감안한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및 중복계상된 내역 검토

[토목공사]

○○지구 연안정비 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3.
- 사업규모
 - 목 적 : 연안정비 사업
 - 규 모 : 연안정비 L=0.386km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447,250		1,294,740	152,510	10.5%

주요 심사내용

- 데크상판 설치품 조정
 - 목재 가공 설치 → 마루 널깔기
- 오탁방지망 설치비 삭제
 - 환경보전비로 대체
- 타지역자재 → 도내 관급자재로 조정
 - 합성목재, 목재난간, 자동문비, 운동시설물 등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타지역 자재를 도내자재로 비교 검토

【토목공사】

○○마을 조성사업

사업개요

- 심사기관 : ○ ○ 군
- 심사일자 : 2012. 3.
- 사업규모
 - 목 적 : 지역 특성화 마을 조성사업
 - 규 모 : A = 17,600m², 건물 2동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822,066		2,451,134	370,372	13.0%

주요 심사내용

- 철근 가공 및 조립품 조정
 - 철근 현장가공 → 공장가공 적용
- 목교, 명당쉼터 플랜트 설치품 조정
 - 잡철물제작설치 → 철골가공조립(60ton 미만) 적용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과다계상된 수목 식재 규격 조정
- 타지역자재 → 도내 관급자재로 조정
 - 천연목재, 파고라, 황토포장, 투수블럭 등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타지역 자재를 도내자재로 비교 검토

[토목공사]

○○체험마을 조성사업

사업개요

- 심사기관 : ○ ○ 군
- 심사일자 : 2012. 3.
- 사업규모
 - 목 적 : 지역 특성화 마을 조성사업
 - 규 모 : A=11,029m²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732,063		626,829	105,234	14.4%

주요 심사내용

- 수량 오기된 순성토 물량 조정
 - 23,050m³ → 18,670m³
- 목재난간 설치품 조정
 - 목구조체 설치(보통구조) → 간단구조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중복계상된 배선선로 공사품 조정
 - 내선전공, 케이블공 터파기, 되매우기 → 삭제
- 타지역자재 → 도내 관급자재로 조정 : 동의자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및 중복 계상된 내역 검토
- 타 지역 자재를 도내 생산자재로 비교 검토

[토목공사]

○○천 하도준설사업

사업개요

- 심사기관 : ○ ○ 군
- 심사일자 : 2012. 3.
- 사업규모
 - 목 적 : 지역 소하천 하도준설사업
 - 규 모 : 호안블록 5,229㎡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845,710		788,870	56,840	6.7%

주요 심사내용

- 법면보호공 조정
 - 줄떼, 평떼 식재 → 거적덮기 적용
- 교량공 레미콘타설품 조정
 - 레미콘타설(무근, 철근) → 레미콘타설(펌프카)
- 철근가공 및 조립품 조정
 - 철근 현장가공 → 공장가공 적용
- 구조물 거푸집 설치품 조정
 - 합판거푸집(3회,4회,6회) → 유로폼 적용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및 중복 계상된 내역 검토

[토목공사]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

사업개요

- 심사기관 : ○ ○ 시
- 심사일자 : 2012. 5.
- 사업규모
 - 목 적 : 국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
 - 규 모 : 자전거도로 L = 5.1km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680,000		2,299,800	380,200	14.1%

주요 심사내용

- 휴게 데크상부 설치품 조정
 - 잡철물 제작 설치 → 부대철골 가공설치 적용
- 녹지대 수목 수량 및 식재 규격 조정
- 과다 계상된 가설울타리 삭제
- 법면보호공 조정(평떼 → 거적덮기)
- 타지역 자재 → 도내 관급자재로 조정
 - 목재틀 옹벽, 가드레일, 버스승강장 등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 타지역 자재를 도내자재로 비교 검토

【토목공사】

○○구조물 철거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시
- 심 사 일 : 2012. 3.
- 사업규모
 - 목 적 : 공사추진을 위한 구조물 철거
 - 규 모 : 창고, 공장동, 사일로14기 철거

심사결과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단위 : 천원)
2,279,600		1,979,200	300,400	절감률
				13.2%

주요 심사내용

- 석면 내·외장재 해체 및 제거
 - 현장뒷정리 삭제, 약품살포 도장공 0.068인 → 보통인부 0.068인
 - 보호구 및 소모품 (방진장갑) 조정
- 사전취약화 인력 품 조정 (현지여건 반영)
 - 인력 철근콘크리트 깨기 → 백호우 0.2m³ + 브레이크
- DIAMOND WIRE SAW 절단 인력 품 조정 - 조력공 삭제
- 폐기물 상차 장비 변경
 - 백호우 0.7m³ → 백호우 1.0m³, 싸이클타임 20Sec(135도) → 19Sec(90도)
- 건축물철거 적용 품 변경
 - 인력 10%, 기계 90% → 기계 100%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과다설계·계상 등 검토
- 현지여건에 적합한 중기 사용 검토

【토목공사】

○○지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사업개요

요청기관 : ○ ○ 시

심사일 : 2012. 3.

사업규모

- 목 적 : 송·배수관로 신설

- 규 모 : 송수관로 : D250~300mm, L=17.2km

배수관로 : D80~300mm, L=60.5km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4,420,700		13,571,930	848,770	5.9%

주요 심사내용

터파기(연암) 대형브레이커+백호우(0.7m³) 산출내역 조정

- Q = 5.0m³/hr → Q = 5.5m³/hr

- 인력 품 : 할석공, 보통인부 → 삭제

잔토처리(토사-배수지구간) 장비 조정

- 상차 : 백호우(0.7m³) → 백호우(1.0m³)

- 운반 : 덤프(15TON) → 덤프(24TON)

● 잔토처리(풍화암-배수지구간) 장비 조정

- 상차 : 백호우(0.7m³) → 백호우(1.0m³)
- 운반 : 덤프(15TON) → 덤프(24TON)
- v1=25m/분, v2=25m/분 → v1=35m/분, v2=35m/분
- 적재 대기시산 유류대 공제

● 교량 관매달기 설치품 조정

- 잡철물 제작, 설치 (보통) → (간단)

● 모체침투성 방수 산출내역 조정

- 방수 공 0.17인 → 방수 공 0.11인
- 보통인부 0.19인 → 보통인부 0.05인

● PP마대 쌓기 및 헐기 산출내역 조정

- PP마대 쌓기 및 헐기 → 톤 마대 쌓기 및 헐기

● 보조기층재 자재 일부 변경

- 순환골재(재생) 15% 적용

● 추진공사 공법 변경

- 이수가압식(세미실드) 특허공법 → 강관 압입공법(건설표준품)

● 되메우기(토사-배수지구간) 장비 조정

- 램머다짐 (80KG) → 플레이트 콤팩터(1.5TON)

심사 착안사항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계상 검토
- 현지여건에 적합한 중기 사용여부

[토목공사]

○○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3.
- 사업규모
 - 목 적 : 재해 위험지구 정비
 - 규 모 : 차집관로(BOX □1.5×1.5) L=528m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7,615,980	⇒	7,152,780		463,200	6.1%

주요 심사내용

- 관로터파기 장비규격 조정, 인력품(10%) 삭제
 - 백호우 0.7m³ + 인력 → 백호우 1.0m³
- 하수도준설 작업편성 인원 조정('12년 개정품 적용)
 - 특별인부 3인 → 특별인부 2.2인, 보통인부 1인 → 보통인부 1.4인
- 기초, 피복석고르기(수중)품 조정
 - 잠수부 1조(잠수부 4인) → 잠수부 1조(잠수부 1인, 특별 1인, 선원 1인)

● 조립식PC암거 설치 장비규격 조정

- PC암거 중량을 감안 크레인 40ton → 크레인 25ton

● 철근콘크리트 타설 품 조정(저류지)

- 레미콘타설 → 펌프카 타설

● 발파암 깎기 품 조정

- 작업 보조인부 1인 → 삭제

심사 착안사항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계상 검토
- 현지여건에 적합한 중기 사용여부

[토목공사]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시
- 심 사 일 : 2012. 4.
- 사업규모 : 하천정비 L=3.0km

심사결과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7,331,000		6,358,000	973,000	13.2%

(단위 : 천원)

주요 심사내용

- 준설공법 변경
 - 펌프준설 → 펌프준설 + 기계준설 혼용
- 성토 운반거리 및 장비 조정
 - 운반거리 L=20km → 8km, 도차 19ton → 32ton
- 세륜시설 설치 및 해체 조정
 - 비계공 3인 → 2인, 콘크리트타설(인력) → 펌프카 타설
 - 거푸집(합판6회) → 유로폼
- 가시설물 공법 변경
 - 현장여건을 감안 시트파일 향타, 항발 삭제, 생태호안 저면 방근시트 및 PE시트 삭제
- 잡석부설 장비 조정
 - 다짐장비 램머(80kg) → 콤팩터(1.5ton), 굴삭기 0.7m³ → 1.0m³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과다설계·계상 등 검토
- 현지여건에 적합한 중기 사용여부

【토목공사】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6.
- 사업규모
 - 목 적 : 상하수도 정비
 - 규 모 : 오수 L=16,4km, 우수L= 5,4km, 상수관로 L=9.1km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7,221,970		6,033,020	1,188,950	16.5%

주요 심사내용

- 스틸그레이팅 수량조정
 - 우수처리를 위한 스틸그레이팅 (타지역 기성품 5,530EA)
 - 콘크리트 뚜껑 현장제작(4,115EA) + 스틸그레이팅 제작
- 건설 폐기물파쇄 장비 규격 조정
 - 이동식크라샤 100ton → 이동식크라샤 150ton
- PE다중벽관 접합 및 부설(D250mm)품 조정
 - 배관공(수도) 0.19인 → 0.16인, 보통인부 0.2인 → 0.16인

● 고무 아스팔트 도막방수(바닥면)품 조정

- 방수공(수도) 0.08인 → 0.07인, 보통인부 0.12인 → 0.04인

● 콘크리트포장(소운반) 장비 조정

- 레미콘 소운반 경운기 → 덤프 2.5TON

● 아스팔트포장(표층 및 기층)적용 품 조정

- 인력식 소규모포장 → 기계포장

● 우수맨홀 뚜껑설치 품 조정

- 보통인부 0.5인/EA → 재료비의 5%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계상 검토
- 현지여건에 적합한 중기 사용여부

건 축 공 사

【 건축공사 】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공사
- ○○보건소 신축공사
- ○○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 ○○체험관 건립공사
- ○○성역화사업
-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
- ○○건강관리센터 건립공사
- ○○생태 숲 조성사업
- ○○전시관 건립공사
- ○○장사시설 건립공사

[건축공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1. 8. 16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주요내용 : 교육관 등(건축연면적 2,087㎡)
- 발주유형 : 건축공사(토목, 기계설비공사 포함)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3,350,320		10,973,192	2,377,128	17.8%

주요 심사내용

- 내부수평비계 → 이동식말비계
 - 13,830,000원 → 2,877,000원
 - ※ 근거 : 건축계획 검토
- 노출콘크리트 거푸집 단가 조정
 - 50,286원/㎡ → 24,389원/㎡
 - ※ 근거 : 국토부 실적가
- 알루미늄 복합패널 단가 조정
 - 125,000원/㎡ → 88,800원/㎡
 - ※ 근거 : 조달시공가

강화마루 단가조정

- 101,777원/㎡ → 46,223원/㎡
- ※ 근거 : 시장조사

건축물 위치조정 기초 단가절감

- 157,833,000원 → 111,362,000원
- ※ 근거 : 건축계획 검토

토목 PE이중벽관 부설 및 집합 품 조정

- 80,100원/개소 → 65,733원/개소
- ※ 근거 : 건설품셈

토목 잔디 롤형 → 평매

- 33,324원/㎡ → 8,949원/㎡개소
- ※ 근거 : 토목계획 검토

지역생산제품 적용(사급자재 → 관급자재)

- 알루미늄창호 : 237백만원 → 159백만원
- 플로어링보드 : 44백만원 → 42백만원

심사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주요자재 지역생산제품 적용

【건축공사】

○○보건소 신축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시
- 심 사 일 : 2012. 1. 26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 주요내용 : 보건소(건축연면적 4,095㎡)
- 발주유형 : 건축공사(토목, 기계설비공사 포함)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6,942,795		6,107,758	835,037	12%

주요 심사내용

-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토목 중복 삭제
 - ※ 근거 : 건축 및 토목계획 검토
- 미장 및 도장공사 수량 조정
 - ※ 근거 : 수량산출서 확인
- 수밀코킹 단가조정
 - 2,658원/㎡ → 279원/㎡
 - ※ 근거 : 조달 시공가
- 강설비용 산정
 - ※ 근거 : 건축계획 검토

● 유리 끼우기 및 닦기 단가조정

- 22,818원/m² → 8,700원/m²

※ 근거 : 조달 시공가

● 엘리베이터 관급조정

- 105,600,000원 → 84,700,000원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토목 파형강관 재료비 이중계산 조정

- 26,096원/m → 1,394원/m

※ 근거 : 토목 설계서 확인

● 토목 화강석 판석 → 점토블럭

※ 근거 : 토목 계획 검토

● 지역생산제품 적용(사급자재 → 관급자재)

- 그을림한식기와 : 137백만원

- 물 탱 크 : 22백만원

- 전열교환기 : 103백만원

심사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 주요자재 지역생산제품 적용

[건축공사]

○○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2. 14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주요내용 : 체육센터(건축연면적 5,195㎡)
- 발주유형 : 건축공사(토목, 기계설비공사 포함)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 감 액	절 감 륜
12,391,570		11,185,256	1,206,314	9.7%

주요 심사내용

- 녹막이페인트칠 조정
 - 2,849원/㎡ → 2,246원/㎡
 - ※ 근거 : 국토부 실적가
- 폴리싱타일 단가 조정
 - 50,000원/㎡ → 31,500원/㎡
 - ※ 근거 : 시장조사
- 폴리카보네이트 단가 조정
 - 135,449원/㎡ → 123,136원/㎡
 - ※ 근거 : 시장 조사

흡음테크판넬 단가 조정

- 1,134,737,832원 → 1,017,059,567원

※ 근거 : 시장조사

토목 기초모래 포설 중기규격 조정

- 0.4m³ → 0.7m³(△303원/m³)

※ 근거 : 현지여건 검토

굴삭기 cycle time 조정

- 135°(20초) → 90°(18초) : △192원/m³

※ 근거 : 현지여건 검토

기계 천공 및 그라우팅 단가 조정

- 405,600,000원 → 284,370,000원

※ 근거 : 기계설비계획 검토

지역생산제품 적용(사급자재 → 관급자재)

- 알루미늄창호 : 321백만원 → 283백만원

- 관람석 의자 : 81백만원 → 74백만원

- 회의실 의자 : 79백만원 → 67백만원

- 농구대 : 24백만원 → 22백만원

- 제트공조기 : 146백만원 → 97백만원

심사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 주요자재 지역생산제품 적용

[건축공사]

○○체험관 건립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2. 15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주요내용 : 전시관, 체험관(건축연면적 811㎡)
- 발주유형 : 건축공사(토목, 조경, 기계설비공사 포함)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221,610		1,982,265	239,345	10.8%

주요 심사내용

- 강관비계매기 → 이동식강관말비계
 - 25,025,931원 → 3,142,247원
 - ※ 근거 : 현장여건 및 건축계획 검토
- 점토타일 붙임 단가 조정
 - 65,000원/㎡ → 61,519원/㎡
 - ※ 근거 : 시장 조사
- 올퍼티 → 줄퍼티
 - 9,390원/㎡ → 3,440원/㎡
 - ※ 근거 : 건축계획 검토

● 토목 스틸그레이팅 자재단가 조정

- 282,960원/개 → 83,730원/개

※ 근거 : 시장조사

● 토목 PE 우수받이 설치단가 조정

- 7,400원/개 → 740원/개

※ 근거 : 건설품셈

● 토목 굴삭기 cycle time 조정

- 135°(20초) → 90°(18초) : △192원/m³

※ 근거 : 현지여건 검토

● 조경수 규격 및 식재비 조정

- 286,186,000원 → 228,263,000원

※ 근거 : 조경계획 검토

● 지역생산제품 적용(사급자재 → 관급자재)

- 전열교환기 : 18백만원

심사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정한 공법 적용여부
- 주요자재 지역생산제품 적용

【건축공사】

○○ **성역화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3. 21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 주요내용 : 전시관 신축(건축연면적 2,253㎡)
- 발주유형 : 건축공사(토목, 조경, 기계설비공사 포함)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8,413,370		7,628,850	784,520	9.3%

주요 심사내용

- 페로테크 설치단가 조정
 - 39,500원/㎡ → 32,500원/㎡
 - ※ 근거 : 시장조사
- 석재 붙임 단가 조정
 - 91,000원/㎡ → 43,900원/㎡
 - ※ 근거 : 조달 시공가
- 단연뿔칠 단가조정
 - 24,000원/㎡ → 12,800원/㎡
 - ※ 근거 : 시장 조사

● 유리끼우기 및 닦기 단가조정

- 22,818원/㎡ → 8,700원/㎡

※ 근거 : 조달 시공가

● 토목 순성토 증기효율 조정

- 3,726원/㎡ → 3,070원/㎡

※ 근거 : 조달 시공가

● 조경수 규격 및 식재비 조정

- 1,168,559,000원 → 1,025,766,000원

※ 근거 : 조경계획 검토

● 지역제품 적용(사급자재 → 관급자재)

- 잔디블럭 : 16,640,000원 → 13,832,000원

심사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정한 공법 적용여부
- 주요자재 지역생산제품 적용

[건축공사]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3. 29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원 신축(건축연면적 6,048㎡)
- 발주유형 : 건축공사(토목, 조경, 기계설비공사 포함)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7,159,669		6,333,977	825,692	11.5%

주요 심사내용

- 건축물 현장정리비 면적 조정
 - 48,009,024원 → 30,675,330원
 - ※ 근거 : 건축계획 검토
- 각파이프 하지틀 설치비 조정
 - 45,644원/㎡ → 28,270원/㎡
 - ※ 근거 : 건설품셈
- 종이거푸집 → 원형거푸집
 - 30,674/㎡ → 23,686원/㎡
 - ※ 근거 : 건축계획 검토

● **조경석 단가 조정**

- 80,000원/톤 → 35,000원/톤
- ※ 근거 : 시장조사

● **조경수 규격 및 식재비 조정**

- 217,868,000원 → 200,537,000원
- ※ 근거 : 조경계획 검토

● **기계 수도이음관 등 배관용자재 단가조정**

- 73,000,000원 → 50,680,000원
- ※ 근거 : 시장조사

● **기계 CO2 보일러 단가조정**

- 105,000,000원 → 79,200,000원
- ※ 근거 : 시장조사

● **지역제품 사용(타도 → 도내)**

- 알루미늄 창호 : 268백만원

심사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 주요자재 지역생산제품 적용

[건축공사]

○○건강관리센터 건립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5. 9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주요내용 : 한옥단지 조성(건축연면적 m²)
- 발주유형 : 건축공사(토목, 기계설비공사 포함)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8,009,127		7,279,020	730,107	9.1%

주요 심사내용

- 건축물 현장정리비 조정(철콘조 → 철골조)
 - 15,299,410원 → 8,789,795원
- 천연대리석 → 인조대리석 붙임
 - 35,125,170원 → 14,377,800원
 - ※ 근거 :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 원목마루 단가 조정
 - 92,354,400원 → 50,417,984원
 - ※ 근거 : 시장가격 조사

티타늄 아연도강판 단가 조정

- 520,318,945원 → 455,969,244원

※ 근거 : 시장가격 조사

토목 데크 설치품 조정

- 23,848,282원 → 18,088,738원

※ 근거 : 건설품셈

조경수 규격 및 식재비 조정

- 186,424,787원 → 97,241,647원

※ 근거 : 조경계획 검토

토목 투수블럭 → 콘크리트블럭

- 46,109,400원 → 15,026,400원

※ 근거 : 현지여건 검토

지역생산제품 적용(사급자재 → 관급자재)

- 앞음벽 → 평의자 및 등의자 : 28백만원 → 7백만원

- 물탱크 : 39백만원 → 31백만원

심사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주요자재 지역생산제품 적용

[건축공사]

○○ 생태 숲 조성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시
- 심 사 일 : 2012. 6. 8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주요내용 : 체험관 신축(건축연면적 481m²)
- 발주유형 : 건축공사(기계설비공사 포함)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115,689		955,837	159,852	14.3%

주요 심사내용

- 내부 말비계 → 이동식 말비계
 - 1,957,618원 → 350,165원
 - ※ 근거 : 건축계획 검토 확인
- 철근가공 조정(현장가공 → 공장가공)
 - 25,545,098원 → 17,774,378원
 - ※ 근거 : 건설품셈
- 석재 바닥붙임
 - 78,061,753원 → 41,090,900원
 - ※ 근거 :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 지역생산제품 적용(사급자재 → 관급자재)
 - 고밀도목재패널 → 천연목재 사이딩 : 72백만원 → 18백만원

심사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 주요자재 지역생산제품 적용

【건축공사】

○○전시관 건립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6. 14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주요내용 : 전시관(건축연면적 2,794㎡)
- 발주유형 : 건축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4,689,330		4,221,101	468,229	10%

주요 심사내용

- 난열성단열재 → 발포폴리스티렌
 - 109,181,614원 → 53,602,681원
 - ※ 근거 : 단열규정 및 건축계획 검토
- 토목 배수관 설치비 조정(흙관 → 파형강관)
 - 60,137,194원 → 8,989,164원
 - ※ 근거 : 현지여건 등 확인
- 조경 수목자재비 조정
 - 360,960,000원 → 325,340,000원
 - ※ 근거 : 조경계획 검토

● 부스터 펌프 관급 조정

- 18,000,000원 → 6,764,000원

※ 근거 : 자재 단가 조사

● 지역생산제품 적용(사급자재 → 관급자재)

- 천연목데크 : 164백만원 → 51백만원

- U형측구 : 14백만원 → 5백만원

- 파고라 : 13백만원 → 5백만원

심사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정한 공법 적용여부
- 주요자재 지역생산제품 적용

[건축공사]

○○장사시설 건립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시
- 심 사 일 : 2012. 7. 16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주요내용 : 화장장 및 봉안당(건축연면적 4,225㎡)
- 발주유형 : 건축공사(토목,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포함)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9,512,975		8,528,343	984,632	10.4%

주요 심사내용

- 기초 잡석 물량 조정
 - 78,052,191원 → 43,936,497원
 - ※ 근거 : 현장여건 및 구조확인 조정
- 철근 가공 조정(현장가공 → 공장가공)
 - 208,347,575원 → 166,772,426원
 - ※ 근거 : 건설품셈
- 내화페인트 칠 조정(붓칠 → 뿜칠)
 - 16,798,600원 → 4,367,636원
 - ※ 근거 : 현장여건 확인 조정

● 목공사 하지틀 단가 조정

- 98,370,832원 → 55,165,213원

※ 근거 : 건설품셈

● 우레탄복합방수 → 우레탄방수

- 86,191,639원 → 28,082,391원

※ 근거 : 건축물 방수계획 확인 조정

● 각파이프 루버 단가 조정

- 90,217,718원 → 58,875,538원

※ 근거 : 건설품셈

● 엘리베이터 관급조정

- 108,900,000원 → 84,619,000원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지역생산제품 적용(사급자재 → 관급자재)

- 천연목 사이딩 : 98백만원 → 77백만원

심사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정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기계·전기·통신·소방공사

【 기계·전기·통신·소방공사 】

-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
- ○○마을 조성사업
- 종합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
-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사업
- 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건립공사
-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 노인복지종합센터 건립사업
- 시민 무인공영자전거 온누리 설치사업
- ○○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 ○○친환경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 ○○ 도서식수원 개발공사
- ○○보건소 신축공사
- 축구전용구장 조명탑 설치공사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 ○○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마을 조성사업
- ○○도시 개발사업
- ○○장사시설 건립 공사
- ○○오토캠핑리조트 조성공사
- ○○장사시설 건립 통신공사
- 청소년수련원 건립 소방공사

[기계공사]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2. 2
- 사업규모
 - 목 적 :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
 - 규 모 : 이송펌프 및 스크린 등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256,509		1,159,904	96,605	7.7%

주요 심사내용

- 파이프(STS) 단가 조정
 - 96,830원/M → 81,180원/M 등 10종 단가 조정
 - ※ 근거 : 조달청 고시단가
- 자외선 소독설비 단가 조정
 - 63,000,000원/대 → 40,000,000원/대(△23,000,000원)
 - ※ 근거 : 견적가격 → 조달청 고시단가, 물가정보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정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기계공사]

○○마을 조성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2. 20
- 사업규모
 - 목 적 : ○○마을 조성 사업
 - 규 모 : 기계설비 및 옥외배관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70,055		194,809	75,246	27.9%

주요 심사내용

- 전열교환기 단가 조정
 - 35,710,000원/대 → 31,592,000원/대(△4,118,000원)
 - ※ 근거 : 조달청 고시단가
- 보온재 설치 노임(보온공) 조정
 - 0.039인/M → 0.0375인/M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기계공사]

종합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2. 19
- 사업규모
 - 목 적 : 종합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 규 모 : 기계설비 및 옥외배관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258,734		1,968,551	290,183	12.8%

주요 심사내용

- 제트공조기 단가 조정
 - 146,250,000원/대 → 97,000,000원/대 (△49,250,000원)
 - ※ 견적가격 → 조달청 고시단가, 물가정보
- 물탱크(STS) 단가 조정
 - 65,000,000원/조 → 46,500,000원/조 (△18,500,000원)
 - ※ 근거 : 조달청 고시단가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기계공사]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시
- 심 사 일 : 2012. 3. 9
- 사업규모
 - 목 적 :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
 - 규 모 : 배수펌프 및 배관공사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33,186		213,803	19,383	8.3%

주요 심사내용

- 수중배수펌프 단가 조정
 - 3,200,000원/대 → 2,268,000원/대(△932,000원)
 - ※ 견적가격 → 조달청 고시단가, 물가정보
- 파이프(STS) 등 25종 단가 조정
 - 19,240원/M → 15,130원/M (△4,110원/M)
 - ※ 근거 : 조달청 고시단가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기계공사]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3. 13
- 사업규모
 - 목 적 :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사업
 - 규 모 : 재활용선별기 및 배관공사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71,793	⇒	236,226	35,567	13.1%

주요 심사내용

- **덤웨이트 시운전비 삭감**
 - 6,670,000원 → 0원(△6,670,000원)
 - ※ 근거 : 관급자재비에 시운전비 포함
- **오수정화조 시설 단가 조정**
 - 12,229,000원/조 → 10,694,000원/조(△1,535,000원)
 - ※ 근거 : 조달청 고시단가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기계공사]

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건립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시
- 심 사 일 : 2012. 3. 26
- 사업규모
 - 목 적 : 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건립공사
 - 규 모 : 냉·난방기 및 배관공사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45,284		131,849	13,435	9.2%

주요 심사내용

- 부스타 펌프 단가 조정
 - 12,858,000원/대 → 5,349,000원(△7,509,000원)
 - ※ 비교견적 → 조달청 고시단가(3자단가)
- 부스터펌프, 물탱크(사급자재 → 관급자재) 조정
 - 조달청 3자단가 적용 : 6,184,000원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정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기계공사]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시
- 심 사 일 : 2012. 4. 12
- 사업규모
 - 목 적 :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 규 모 : 펌프 및 배관공사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81,000		227,024	53,976	19.2%

주요 심사내용

- 자외선 살균기 단가 조정
 - 11,500,000원/대 → 10,450,000원/대(△1,050,000원)
 - ※ 비교견적 → 조달청 고시단가, 물가정보
- 시운전 내역 조정
 - 중급 12인 → 중급 6인(△1,994,000원)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기계공사]

노인복지종합센터 건립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4. 23
- 사업규모
 - 목 적 : 노인복지종합센터 건립사업
 - 규 모 : 냉·난방기 및 위생기구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13,809		185,582	28,227	13.2%

주요 심사내용

- 환기배관공사 자재 물량 조정
 - 경질염화비닐관 : 133M → 83M
- 태양열 집열기 설치 노임 조정
 - 잠철물 제작·설치 → 잠철물 제작(△2,165,000원)
 - ※ 근거 : 현장 및 작업 여건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정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기계공사】

시민 무인공영자전거 온누리 설치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시
- 심 사 일 : 2012. 5. 11
- 사업규모
 - 목 적 : 시민 무인공영자전거 온누리 설치사업
 - 규 모 : 자전거 보관대 및 전력간선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66,590		347,880	18,710	5.1%

주요 심사내용

- 경질염화비닐전선관 등 10종 단가 조정
 - 1,993,000원 → 1,670,000원(△323,000원)
 - ※ 근거 : 조달청 고시단가
- 자전거 키오스크 단가 조정
 - 52,800,000원/4대 → 46,256,000원/대(△6,544,000원)
 - ※ 근거 : 조달청 고시단가, 물가정보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정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기계공사]

○○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5. 31
- 사업규모
 - 목 적 : ○○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 규 모 : 양수장 및 송수관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640,558		568,228	72,330	11.3%

주요 심사내용

- 폴리에틸렌피복강관 등 15종 단가 조정
 - 9,153,000원 → 8,673,000원(△480,000원)
 - ※ 조달청 고시단가, 물가정보
- 역지면 밸브(300mm) 등 6종 단가 조정 △71,815,000원
 - ※ 근거 : 조달청 고시단가, 물가정보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기계공사]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시
- 심 사 일 : 2012. 6. 14
- 사업규모
 - 목 적 : 복지관 리모델링
 - 규 모 : 냉·난방기 및 위생기구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473,775		404,530	69,245	14.6%

주요 심사내용

- 마그네슘이온화처리기 내역 삭감
 - 12,100,000원 → 0원(△12,100,000원)
 - ※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설계 반영 검토
- 부스터펌프 단가 조정
 - 22,000,000원/1대 → 9,945,000원/대(△12,055,000원)
 - ※ 근거 : 조달청 고시단가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기계공사]

○○친환경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7. 16
- 사업규모
 - 목 적 : 친환경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 규 모 : 냉·난방기 및 위생기구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483,763	→	452,635		31,128	6.4%

주요 심사내용

- 배기팬(천정형) 물량 조정
 - 2,569,000원/46개 → 1,899,000원/34개
 - ※ 도면과 내역 상이
- 세면기(각형) 수량 조정
 - 4,968,000원/21조 → 4,791,000원/20조
 - ※ 도면과 내역 상이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전기공사]

○○ 도서식수원 개발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시
- 심 사 일 : 2012. 2. 2
- 사업규모
 - 목 적 : 도서식수원 개발공사
 - 규 모 : 정수장 등 전력간선 및 계측제어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661,680		622,486	39,194	5.9%

주요 심사내용

- 강제전선관 등 15종 단가 조정
 - 강제전선관 : 2,300원/M → 1,700원/M
 - ※ 근거 : 조달청 고시단가
- 계측제어 시스템 단가 조정
 - 382,817,000원/식 → 372,746,000원/식(△10,071,000원)
 - ※ 근거 : 견적가격 → 조달청 고시단가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전기공사]

○○보건소 신축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시
- 심 사 일 : 2012. 2. 7
- 사업규모
 - 목 적 : 보건소 신축공사
 - 규 모 : 태양광 발전, 수변전, 발전기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809,352		768,581	40,771	5.0%

주요 심사내용

- 접지공사 노임 공량 조정
 - 내선전공 0.011인 → 0.008인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폴리에틸렌 전선관 노임 공량 조정
 - 내선전공 0.08×80% → 0.08×70%(지중매설적용)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태양광발전설비 단가 조정
 - 200,900,000원/식 → 187,074,000원/식(△13,826,000원)
 - ※ 근거 : 조달청 고시단가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전기공사]

축구전용구장 조명탑 설치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4. 7
- 사업규모
 - 목 적 : 축구전용구장 조명탑 설치공사
 - 규 모 : 조명탑(20M) 및 전력간선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456,540		432,230	24,310	5.3%

주요 심사내용

- 콘크리트 포장깨기 단가 조정
 - 24,639원/m³(실적단가) → 18,512원/m³(품셈적용)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조명탑 피뢰침 기초 설치비 삭감
 - ※ 조달청 등록 품목으로 조명탑에 피뢰침 설치비 포함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전기공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시
- 심 사 일 : 2012. 4. 13
- 사업규모
 - 목 적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 규 모 : 태양광발전설비 및 전력간선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869,416		858,163	11,253	1.3%

주요 심사내용

- 인버터 기초대 내역 조정
 - 1,492,000원(2.4×1.2×0.3) → 409,000원(2.4×1.2×0.1)
- 아스팔트 포장절단 및 포장 내역 조정
 - 5,751,000원/20m³ → 196,000원/4.8m³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정한 태양광 설비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전기공사]

○○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4. 10
- 사업규모
 - 목 적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규 모 : 전력간선 및 수변전 설비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414,199		376,506	37,693	9.1%

주요 심사내용

- 수변전 설비 기초 매쉬웬스 내역 삭감
 - 4,370,000원 → 0원(토목공사에 기반영)
- 폴리에틸렌전선관 등 15종 단가 조정 : △1,750,000원
 - ※ 근거 : 물가정보 → 조달청 고시단가
- 제경비 효율 조정 : △2,922,000원
 - ※ 간접노무비 10.5% → 8.5%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전기공사]

○○마을 조성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3. 30
- 사업규모
 - 목 적 : ○○마을 조성
 - 규 모 : 전력간선 및 등기구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580,760		516,840	63,920	11%

주요 심사내용

- 경질비닐전선관 등 16종 단가 조정 : △13,505,000원
 ※ 근거 : 조달청 고시단가
- 가로등주 터파기 물량 조정
 - 1,295m³ → 580m³(△8,849,000원)
- 가로등주 전선관 및 설치 노임 조정
 - 내선전공 : 313인 → 154인(△17,889,000원)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정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전기공사]

○○도시 개발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공사
- 심 사 일 : 2012. 3. 21
- 사업규모
 - 목 적 :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 규 모 : 가로등, 보안등 및 부대시설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5,470,122		4,933,031	537,091	9.8%

주요 심사내용

- 가로등 중공기초 설치비 삭감 : △18,000,000원
 - ※ 기성품으로 현장제작 설치비 삭감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노임 조정 : △65,029,000원
 - 공사 실적단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관급자재 단가 조정
 - 가로등주(8M) 등 5종 : △304,210,000원
 - ※ 근거 : 비교견적 → 조달청 고시단가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전기공사]

○○장사시설 건립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시
- 심 사 일 : 2012. 7. 9
- 사업규모
 - 목 적 : 장사시설 건립공사
 - 규 모 : 옥외전력 및 건축물, 옥외 보안등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927,138		883,532	43,606	4.7%

주요 심사내용

- 합판거푸집 노임 공량 조정 : △1,777,000원
 - 형틀목공 : 0.24인 → 0.088인
- 다운라이트, 아웃렛박스 설치 노임 조정 : △1,140,000원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동일 반복 공정구간 90%적용)
- 가로등 기초 관급 전환
 - 9,753,000원/30주 → 5,584,000원/30주(△4,169,000원)
 - ※ 근거 : 비교견적 → 조달청 고시단가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전기공사】

○○**오토캠핑리조트 조성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6. 14
- 사업규모
 - 목 적 : 오토캠핑리조트 조성공사
 - 규 모 : 옥외전력 및 전등설비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64,420		337,364	27,056	7.4%

주요 심사내용

전선관 등 30종 단가 조정 : △2,266,000원

※ 근거 : 조달청 고시단가

인입전선 및 수변전 설치 기초대 내역 조정

- 거푸집 : 4회 → 6회 적용(△141,000원)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정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통신공사]

○○장사시설 건립 통신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시
- 심 사 일 : 2012. 7. 13
- 사업규모
 - 목 적 : 장사시설 건립 통신공사
 - 규 모 : 옥내외 방송 및 감시용 카메라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91,647		307,825	83,822	21.4%

주요 심사내용

- 합판거푸집 교체처리 및 노무비 조정
 - 보통인부 : 0.1인 → 0.048인, 형틀목공 0.24인 → 0.088인)
- 비상방송앰프 단가 조정
 - 35,587,000원 → 20,212,000원(△18,375,000원)
 - ※ 근거 : 견적가격 → 조달청 고시단가, 물가정보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정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소방공사】

청소년수련원 건립 소방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3. 13
- 사업규모
 - 목 적 : 청소년수련원 건립 소방공사
 - 규 모 : 소방전기 및 유도등 설치 등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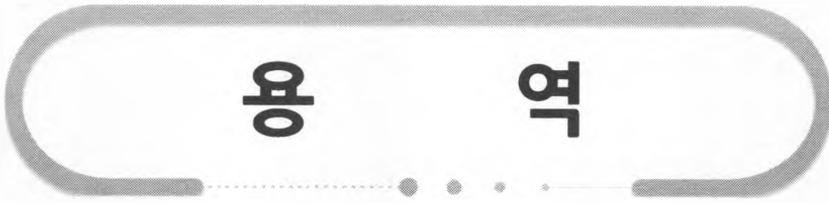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717,849		712,228	5,621	0.8%

주요 심사내용

- 소방조인트 등 15종 단가 조정
 - 15,700원/EA → 12,580원/EA(△3,120원/EA)
 - ※ 근거 : 조달청 고시단가, 물가정보
- 터파기 및 되메우기 조정
 - 장비 60%, 인력 40% → 장비 90%, 인력 10%
 - ※ 현장 작업 여건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정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 일반용역 】

- 생태공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재해위험지구 책임감리용역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용역
-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지하시설물 DB구축용역
- ○○항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용역]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사일 : 2012. 1.
- 사업규모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사업내용 : 공원조성 2개소, 생태탐방로 기본 및 실시설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624,290		1,420,415	208,870	12.9%

주요 심사내용

- 사업 여건 및 계획에 따른 교통성검토 대가 조정
 - 사업계획이 생태탐방로(데크) 및 공원조성으로 대중교통개선 등 사업 여건과 무관한 대가 제외
 - 단지내 교통처리방안에 따른 사업비 감 조정
- 현장 상황을 고려한 환경시험비 조정
 - 한국자가측정자협의회 고시단가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단가 적용
 - 현장상황이 내수면으로 해양생태조사, 해수유동 및 오염확산시험 등 해양분야 시험대가 감 조정

토질 조사비에 포함된 결과 작성비 및 기술료 감액, 제경비 조정

- 표준품셈에 의한 천공 일위대가는 해석비, 결과작성 및 기술료 포함
- 조사업무에 따른 제경비는 (직접비+간접비)의 25~50%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 조정

- 기본 및 실시설계시 설계난이도에 따른 효율의 조정 실시
- 실시설계비의 1.4배 ⇒ 1.3배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및 기반조사 표준품셈의 적정 적용여부
- 현장여건을 고려한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대가 적용기준

[용역]

○○재해위험지구 책임감리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사일 : 2012. 2.
- 사업규모
 -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사업내용 : 교량(120m) 1개소, 배수펌프장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840,000		699,000	141,000	16.8%

주요 심사내용

- 감리원수 및 배치기준 조정
 - 배치기준에 따른 공종구분을 주요공사 내용으로 조정
 - 배수펌프장 등을 감안한 복잡공종 → 교량 등 구조물의 보통공종
 - 감리원수 : 53.49인/월 → 44.49인/월
- 현장사무원 노임조정
 - 건설공사 보통인부(75,608원/일) → 제조업 보통인부(57,859원/일) 적용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감리대가 적용의 적정성 및 현장 노임 적용 여부

[용역]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2.
- 사업규모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 사업내용 : 사적 ○○호 정비사업구간內 정밀발굴조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85,714		223,900	61,814	21.6%

주요 심사내용

- 문화재 발굴조사 대가기준에 따른 직접인건비 조정
 - 경험에 따른 타 사적 발굴조사 인력적용
⇒ 문화재 발굴조사 직접인력 산출근거에 따른 인력조정
- 직접경비 조정
 - 직접경비에 반영한 주휴수당 → 직접인건비로 조정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현장인부 퇴직적립금 감 조정

심사 착안사항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용역]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시
- 심사일 : 2012. 3.
- 사업규모
 - 기간 : 착공일로부터 40개월
 - 사업내용 : 폐아스콘 36,735톤, 폐콘크리트 9,214톤 처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415,480		1,332,000	83,480	5.9%

주요 심사내용

- 현지여건에 따른 운반거리 조정
 - 폐기물수집운반협회 제공단가 ⇒ 인근 중간처리업체 평균거리 적용
운반거리 25km, 10,302원/톤 → 산정거리 15km, 8,648원/톤

심사 착안사항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 중간처리단가
- 물가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단가산출

[용역]

지하시설물 DB구축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5.
- 사업규모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사업내용 :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430,000		1,298,000	132,000	9.2%

주요 심사내용

- 직접인건비 산정을 위한 지형계수 조정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당 초	· 조사 및 편집 : 시가지 100%	
변 경	· 조사 : 밀집시가지5%, 시가지67%, 평지 28% · 편집 : 시가지 72%, 교외지 28%	

- DB 편집분야 적용인건비 조정

- 엔지니어링분야 중급기술자 → 정보처리기사 적용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및 소프트웨어 대가기준
- ○○군 통계자료에 따른 적용 여부

[용역]

○○항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0. 6.
- 사업규모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 사업내용 : 항내 해양쓰레기 처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63,378		340,600	22,778	6.3%

주요 심사내용

- 폐기물 인양어선 조정
 - 예선, 대선, 잠수지원선 → 예선, 대선으로 조정
 - 예선에서 잠수지원선 운영이 가능
- 잠수사 작업효율 조정 및 쓰레기 처리량 조정
 - 작업효율 혼탁(보정계수 0.49) → 보통(보정계수 0.75)
 - 처리량 : 수거량 × 110%(할증적용) → 수거량 × 100% 적용 (개량처리)

심사 착안사항

- 현지여건에 따른 적정단가 적용여부
-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사용료 등

물품구매 · 제조

【 물품구매·제조 】

- ○○ 한옥단지 가구 제작 구입
- ○○문학관 전시물 제작·설치
- 군정홍보용 고정선전탑 게시대 제작·설치
- 버스승강장 제작 구매
- ○○여객선터미널 여객안내용 전광판 구매설치
- ○○환경개선 막 구조물 제작·설치



[물 품]

○○한옥단지 가구 제작 구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공사
- 심 사 일 : 2012. 3. 9
- 주요내용 : 안내데스크, 침대, 협탁, 테이블 등 구입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37,250		311,380	25,870	7.7%

주요 심사내용

(단위 : 천원)

품 명	수량 (대)	요청금액	발주부서 견적 단가		심사액	절감액
			A사	B사		
계		337,250			311,380	25,870
안내데스크	1	5,500	4,680	5,500	4,680	820
벽면데코레이션	1	2,500	1,300	6,500	1,300	1,200
로비테이블	2	3,300	2,730	4,400	2,730	570
문갑대형(탁자포함)	33	143,400	133,500	193,200	133,500	9,900
문갑소형(탁자포함)	32	89,000	83,400	108,000	83,400	5,600
테이블(4인,2인)	15	11,750	8,970	12,750	8,970	2,780
테이블 의자	50	8,000	3,000	11,000	3,000	5,000
로비 의자 등 11종	12	73,800	73,800	122,900	73,800	-

심사 착안사항

- 해당 규격에 맞는 단가의 적정성 검토 및 시중 조사 견적가중 최저가격 적용 산출

[물 품]

○○문학관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1. 25
- 주요내용 : 상설전시관 1식, 기획전시관 1식, 수장고 1식 등 제작·설치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748,537		663,711	84,826	11.3%

주요 심사내용

- 자재 내역 조정
 - 석고판 못 붙임(50.4㎡→39.6㎡) : △2,287
 - 편백 불박이 장(2개→1개) : △10,983천원
 - 비닐페인트 칠(356㎡→295㎡) : △843
- 일위대가 조정
 - ALC 블럭설치, (견적가→내역산출) 조정 : △6,437천원
 - 부식동판제작, 옥외 입체간판, 도로 이정표, 지주형 사인공사, 안내판설치 등

심사 착안사항

- 조달가, 견적가, 물가정보지 등 가격조사를 통한 재료비 단가 및 원가계산서의 불필요 경비 검토

[물 품]

군정홍보용 고정선전탑 게시대 제작·설치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4. 5
- 주요내용 : 고정선전탑 게시대 1기(H=8m, B=4.5m)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74,107		70,818	3,289	4.4%	

주요 심사내용

- **조형물 가공 및 조립품 일위대가 조정**
 - 24,820,490원/식 → 22,579,808원/식 (△ 2,240,682원/m³)
 - 철판공 14.4명 → 13명, 밴딩머신공 12.2명 → 11명
 - 밸런스머신공 4.6명 → 4명, 레이저광선공 14.5명 → 13명
 - 그라인더공 7.1명 → 7명, 보통인부 6명 → 5명 등
- **단가산출서 조정**
 - 잔토처리 : 덤프트럭 15톤(10km) → 15톤(5km)
 - 운반에 따른 보통인부 삭감(2명 → 0명)
- **자재 내역 조정**
 - 못(1,300원/kg→1,100원/kg), 철선(#8 4mm 1,260원/kg→1,200원/kg) 등

심사 착안사항

- 현장설치 품에 대하여는 표준품셈 등을 고려하여 과다계상 여부 검토
- 시중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해당 규격에 맞는 적정단가 적용 검토

[물 품]

버스승강장 제작 구매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1. 12. 16
- 주요내용 : 버스승강장 A타입 10동, B타입 1동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88,500		83,148	5,352
		절감률	
		6.0%	

주요 심사내용

- **잡철물 제작설치비 및 기초공사비 조정**
 - A타입 버스승강장 80,000천 → 75,260천원(△4,740천원, △5.9%)
 - 잡철물 제작 설치 : 보통 → 간단
 - 기초터파기 → 바닥면고르기, 잔토처리비 삭감
 - 콘크리트기초 높이 조정 25cm → 15cm
 - B타입 버스승강장 8,500천원 → 7,888천원(△612천원, △7.2%)
 - 잡철물 제작 설치 : 보통 → 간단
 - 콘크리트기초 높이 조정 25cm → 15cm

심사 착안사항

- 현장설치 품에 대하여는 표준품셈 등을 고려하여 과다계상 여부 검토
- 2011년도 하반기 정부노임대가 적용 등 적정여부 검토

[물 품]

○○여객선터미널 여객안내용 전광판 구매·설치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1. 11. 29
- 주요내용 : 전광판 1식(실시간 항만정보표출시스템, 운항정보관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19,286	⇒	111,446		7,840	6.6%

주요 심사내용

● 재료비 단가 조정

- 운항정보전송 기본솔루션(D-vision) 9,000천원 → 8,118천원(△882천원, △9.8%)
- 실시간 항만정보표출솔루션(DJ-RTDB) 25,000천원 → 22,550천원(△2,450천원, △9.8%)

●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제경비 조정

- 물품구매로 인한 경비(4대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미반영

심사 착안사항

- 솔루션 업체와의 기술지원협약 등을 감안 단가 과다계상 여부 검토
- 물품 구매로 인한 경비 항목 반영 적정성 검토

[물 품]

○○환경개선 막 구조물 제작·설치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시군
- 심사일 : 2011. 12. 16
- 주요내용 : 막제작 1,012.5㎡

심사결과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단위 : 천원) 절감률
740,748		623,773	116,975	15.8%

주요 심사내용

-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가격 조정
 - 흑관 φ 114.3 : 14,150원/m → 12,040원/m
 - 흑관 φ 165.2 : 27,600원/m → 24,250원/m
 - 흑관 φ 216.3 : 31,200원/m → 28,790원/m
 - 흑관 φ 267.4 : 82,850원/m → 67,520원/m
- BENDING 및 MEMBRANE 가격 조정
 - 고주파 가공 45,000원/m > 30,040원/m
 - 친환경 산화티타늄 막재 134,900원/㎡ → 89,000원/㎡

심사 착안사항

○ 해당 규격에 맞는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중가격 및 물가 자료 등 최저가격 적용 검토

시·군 심사사례

【 시·군 심사사례 】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 ○○상수도 배수관 연결공사
- ○○생활폐기물 적환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사업
- ○○교 설치공사
- ○○시장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사업
- ○○소하천 정비공사
- ○○공공하수도시설 도장공사
- ○○마을 한옥펜션 신축공사
- ○○문화재 주변정비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 ○○재활용기반시설 증축사업 감리용역
- ○○신도시 유지관리용역
-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 2012 양식어장 정화사업
- ○○시가지 2차 간판정비공사
- ○○○ 및 나비조형물 제작·설치

【토목공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시
- 심 사 일 : 2011. 10. 11.
- 사업규모
 - 목 적 : ○○산업단지 조성
 - 규 모 : 산업시설, 공원, 주차장, 진입도로 등 총면적 116,455㎡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5,203,300		4,658,400	544,900	10.47%

주요 심사내용

- 현장여건에 맞게 절개지 보강(7,644㎡) 섬유망 공법을 등나무식재로 조정
- 보조기층재 일반골재(2,668㎡)를 재활용 골재로 조정
- 철근 현장가공을 공장가공으로 조정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표준적산 적용 등 검토
- 현장상황 확인, 과다설계 및 공법 검토
-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유도 반영

[토목공사]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시
- 심 사 일 : 2012. 2. 21.
- 사업규모
 - 목 적 : 주차장 확장
 - 규 모 : 주차장 확장(A=832m²)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78,217		160,655	17,562	9.84%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제경비 요율 조정
 - 산재보험료 : 3.6 % → 3.7%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공법 변경
 - 거적덮기 → 때심기로 변경 ※ 현장여건 등을 감안(사면 보호)
- 무근콘크리트깨기 수량 조정
 - 당초 : 445.9m³/원 → 53.1m³/원 ※ 가옥철거 별도 반영에 따른 수량 조정
- 지정(석면)폐기물 철거 분리 발주 ※ 산업안전보건법

심사 착안사항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현장여건에 따른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수량산출 적정 적용여부
- 지정폐기물 분리 발주 적용여부

【토목공사】

○○상수도 배수관 연결공사

사업개요

- 심사기관 : ○ ○ 시
- 심사일자 : 2011. 9. 2.
- 사업규모
 - 규 모 : 배수관로(D700mm) L=156m, 급·배수관로(D200mm) L=78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13,960		97,390	16,570	14.54%

주요 심사내용

- 이형관 접합구간 특수접합과 관로보호공 중복 계상으로 삭감
- 사급자재 → 관급자재로 조정
 - 접합부속품(KP 200mm 12조, KP 700mm 25조), 주철이형관(이음관, 플랜지관, 45°소켓곡관, 소켓T형관)
- KP 메커니컬조인트관 접합부설(D700mm 이형관) 품 조정
 - 배관공 : 0.66인 → 0.637인, - 보통인부 : 0.89인 → 0.429인
 - 크레인(타이어 10t) : 1.06시간 → 0.0시간
- 주철관 절단(D200mm) 품 조정
 - 운전사(기계) : 0.13인 → 0.07인, - 보통인부 : 0.36인 → 0.29인
 - 주철관절단기(2",6") : 0.63시간 → 0.54시간

사토처리 덤프 cm값중 t4값 조정

- 시간(t4) : 0.42분 → 0.15분

폐기물 적사 f(체적환산계수)값 조정

- 환산계수 : 0.67 → 1

심사 착안사항

- 사급자제품목 중 관급자재 적용여부 적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주요 자재단가 조달가격과 시중 물가정보지 가격 비교검토
- 현장여건 등 과다설계 검토

【토목공사】

○○생활폐기물 적환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사업

사업개요

- 심사기관 : ○ ○ 군
- 심사일자 : 2011. 11. 7
- 사업규모
 - 목 적 : 생활폐기물 적환장설치
 - 규 모 : 토공10,239㎡ 배수공 집수정2개소 상수관로(D25)124m
오수관로(D200)114m 표층, 기층포설 30.3a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402,364		1,245,000	157,364	11.22%

주요 심사내용

- 잔토운반거리조정
 - 잔토처리운반거리 당초0.3km에서 0.1km로 조정
- 자재단가조정
 - 골재(사급)에서 슬래그MS40고로슬래그(관급)으로 조정
- 제비율 조정(설계예산서적용)
 - 기타경비 및 이윤 조정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주요 자재단가 조달가격과 시중 물가정보지 가격 비교검토
- 현장여건 등 과다설계 검토

[토목공사]

○○교 설치공사

사업개요

- 심사기관 : ○ ○ 군
- 심사일자 : 2013. 3. 13
- 사업규모
 - 목 적 : 교량가설
 - 규 모 : BOX교 B=7.5m, L=18m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89,400		226,820	62,580	21.62%

주요 심사내용

- 철근가공 및 조립 품 조정(표준품셈 6-2-1)
 - 철근 현장가공 → 철근 공장가공으로 조정
- 강관동바리 설치 품 단가 변경 적용
 - 교량공 3개월 → 암거공 3개월(교량형식 암거공)
 - : 형틀목공 0.16인, 보통인부 0.06인 → 형틀목공 0.06인, 보통인부 0.03인
 - ⇒ 건설표준품셈 2-5-1 참조
- 교면방수공법 변경
 - 라아멘교량 형식은 침투식 공법 적용
 - : 도막식공법 : PSC교량, 거더교량
 - : 침투식공법 : 라아멘교량, RC교 슬래브
 - ⇒ 국도건설공사 설계 지침

교량공 교명주 설치 공제

: 교명판 1개소, 설명판 1개소는 방호벽 또는 난간부에 설치

※ 교명주는 장대교량 등 미관을 고려할때에 한하여 설치함.

⇒ 국토건설공사 설계실무지침(국토해양부)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주요 자재단가 조달가격과 시중 물가정보지 가격 비교검토
- 현장여건 등 과다설계 검토

[토목공사]

○○시장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사업

사업개요

- 심사기관 : ○ ○ 군
- 심사일자 : 2012. 3. 15
- 사업규모
 - 목 적 : 방파제의 해수 소통
 - 규 모 : 진입로 개설(L) : 114m
주차장 설치 : 37대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66,820		210,000	56,820	21.30%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계경비율 조정
 - 간접노무비 11.5% → 10.6%
 - 산업안전관리비 1.81% + 기초금액 → 2.48%
- 개거 콘크리트 깨기 조정
 - 철근콘크리트깨기 → 간이철근콘크리트 깨기
- 폐기물 집토 및 상차 중복으로 삭감
 - 콘크리트 깨기의 들어내기와 상차 중복으로 삭감
- 개거 철근량 산출 단위환산 착오
 - 21.997톤 → 6.104톤 △15,893톤

● **택코팅, 프라임코팅의 청소비 삭감**

- 덧씌우기 포장에서 필요한 청소비 삭감

● **골재운반거리 조정**

- 34km → 18Km, △16km

● **사급자재를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로 조정**

- 카스토퍼(150×120×750) : 74개

심사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여부
-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여부 및 자재구입 방법 검토

[토목공사]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1.
- 사업규모
 - 목 적 : 하천 정비
 - 규 모 : L=392m, B=6.0~12.0m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11,187		156,956	54,231	26%

주요 심사내용

- '12년 개정된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기준 적용
 - 산재보험료 : 3.6% → 3.7%
 - 퇴직공제부금비 : 2.3% → 0.0%(추정금액 3억이상 건설공사 적용)
 - '12년 조달청 고시 단가 적용
 - 기준 환율 : 1140.6원/\$ → 1,153.3원/\$
 - 무연휘발유 : 1,786.3원/L → 1,671원/L
 - 저유황경유 : 1,632.02원/L → 1,496원/L
 - 중 유 : 618원/L → 970원/L
- ※ 근거 : 조달청 가격정보

철근가공 및 조립 품 조정

- 철근 : 현장가공 → 공장가공으로 조정
- 철근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손료는 노력품(가공)의 2% 계상토록 되어 있어 일괄 계상된 손료 가공품의 2% 계상으로 조정
- ※ 근거 : 건설표준품셈

호안블럭 붙이기 품 조정

- '12년 개정된 품 적용

구 분	당 초	조 정	비 고
특별인부	0.11	0.017	
보통인부	0.09	0.007	
크 레 인	-	0.048	

- 평떼 식재 꼬치 품 삭제('08년 개정)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호안블럭 단가 조정 : 도내 생산제품 반영

- 시중 물가정보가격 반영되어 조달가격 중 도내 생산제품으로 조정
- 1㎡당 21,450원 → 17,900원

심사 착안사항

- 공사금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주요 자재단가에 대하여 조달가격과 시중 물가정보지 가격 비교 검토

[건축공사]

○○공공하수도시설 도장공사

사업개요

- 심사기관 : ○ ○ 시
- 심사일자 : 2012. 3. 28.
- 사업규모
 - 목 적 : 공공하수도시설 미관개선
 - 규 모 : 도장공사 6,08.4㎡, 수밀코킹 1,615.8m
최초침전지 체크무늬 강판 교체 3,368.79kg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50,000		116,289	33,711	22.47%

주요 심사내용

- 경량형강철골조립 설치(비내력벽) → 부대철골가공 설치 변경
- 외부마감청소, 페인트 벗기기, 녹제거 등 제외
 - 조합페인트 및 녹막이페인트칠에 바탕만들기 기 반영됨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주요 자재단가 조달가격과 시중 물가정보지 가격 비교검토
- 현장여건 등 과다설계 검토

[건축공사]

○○마을 한옥펜션 신축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4. 2.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주요내용 : 한옥펜션 2동 A=158.4m²(79.2m²×2동)
- 발주유형 : 건축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409,367		460,162	30,205	6.16%

주요 심사내용

일위대가 조정

- 큰달구지지기, 화강석붙임, 떼붙임 등 표준품셈 적용
- 치목 할증(10%)과대 계상(정미량 계상)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재단가 조정

- 다글라스(판재) 사이 당 2,800원 → 2,400원
- 다글라스(각재) 사이 당 2,500원 → 2,400원
 - ※ 지역생산업체 견적조사

■ 사급자재 → 관급자재

- 오수정화조(2ton) 5,500천원 → 4,090천원(도내 생산제품으로 변경)

■ 수량조정

- 오수정화조 (2ton) 2개소 설치 → 1개소
- 콘테이너 가설사무소 2개소 → 1개소

※ 펜션 1동당 오수정화조 및 콘테이너 가설사무소 설치 품을 1개소로 변경

심사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정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건축공사]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개요

- 심사기관 : ○ ○ 군
- 심사일자 : 2012. 5. 4.
- 사업규모
 - 목 적 : 문화재 주변정비
 - 규 모 : 목조 기와조 1층 1동, 36.0㎡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74,000		232,000	42,000	15.3%

주요 심사내용

- 석재해체 및 잡석 다짐비 조정 적용
 - 현장여건 장비 진입 가능(인력 100% → 인력 20% + 기계 80%)
- 석축 시공비 감 조정
 - 석축 시공비에 이중 계상된 한식 석공 70.12인 삭제
- 기존 석축 유용율 조정
 - 기존 석축이 자연석으로 양호함에 따라 유용(20% → 80%)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검토
- 현장여건 등 과다설계 검토

[건축공사]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개요

- 심사기관 : ○ ○ 군
- 심사일자 : 2012. 6. 5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주요내용 : 양로원 증축 1동(3층) A=547.22㎡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931,866		836,444	95,422	10.2%

주요 심사내용

- 조적공사 콘크리트인방 수량 오류 조정
 - 콘크리트인방 물량 조정 : 3,979m → 68.24m(△3,910.76m)
 - 조정사유 : 콘크리트인방 수량 산출시 수치입력 착오로 과다 물량 반영
- 건설폐기물처리 분리 발주
 - 건설폐기물 : 740.8톤(건설폐자재 9.6톤, 석면 3.1톤, 폐콘크리트 728.1톤)
 - 분리발주 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의 규정에 의거 100톤이상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

심사 착안사항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수량산출 적정여부

[용역]

○○재활용기반 시설 증축사업 감리용역

사업개요

- 심사기관 : ○ ○ 군
- 심사일자 : 2012. 5. 7
- 사업규모
 - 목 적 : 공공재활용품 선별 기반시설 증축
 - 규 모 : 재활용품 선별시설 10톤/일

심사결과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단위 : 천원) 절감률
197,900		70,000	127,900	64.63%

주요 심사내용

- 감리원수 조정
 - 상주감리(기계) : 7.94인/월 → 3.44인/월 △ 5.625인/월
 - 기술지원감리 : 1,985인/월 → 1.86인/월 △ 1,125인/월
- 현지차량 운행비 삭감
 - 현장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음.
- 현장사무원 삭감
 - 보통인부 1인 월22일 10개월

심사 착안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책임감리 사업 대상 여부
- 감리원수 적정 배치 여부
- 현장여건에 따른 용역비 산출 여부

[용역]

○○신도시 유지관리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3.31
- 사업규모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사업내용 : ○○신도시 청소 및 유지관리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14,681		280,978	33,703	10.7%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조정
 - 작업책임자 수당조정 기본급 15% → 기본급 13.5% 조정
- 소모품 재료비(수량) 조정
 - PP마대, 짐계, 갈퀴 연간 소요수량 조정
- 기타 경비 조정
 - 교육비를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적용
 - 차량유지비(운반비)를 작업시간, 손료, 유류사용량에 따라 조정
(차량구입비 16,565,732원/년 → 6,165,421원/년(△10,400,311원 절감))
- 복리후생비 과다 계상 조정

심사 착안사항

- 청소용역 가격정보지 등의 표준단가표와 비교
- 인건비 및 작업 여건에 따른 소모품 과다 계상 검토

[용역]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1. 1.
- 사업규모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사업내용 : 폐콘크리트 132톤, 임목폐기물 1,626톤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73,810		43,020	130,790	75.2%

주요 심사내용

- 임목 폐기물 수량 산출 조정
 - 사업장내 발생된 수목 중 본 줄기는 재활용이 가능함으로 수요자에게 공급
 - 뿌리부 및 가지부는 건조 후 현장에서 이동식 파쇄장비를 이용 파쇄(톱밥, 우드칩)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개선

심사 착안사항

- 임목 폐기물 처리 기준(한국농어촌공사)
- 폐기물 관리법

[용역]

2012 양식어장 정화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5.
- 사업규모
 - 어장정화 213ha, 폐기물운반 115톤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59,640	⇒	140,666	18,974	11.9%

주요 심사내용

- 군 어장 정화선 투입에 따른 부가세 감액
- 어장 측량비 감액
 - 어장정화사업은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 어장측량은 연안조사 측량업 등록업체만 가능함에 따라 어장측량은 별도 시행.

심사 착안사항

○ 적정 원가계산 여부 및 지방계약법 관련 과업내용의 적정성

[물 품]

○○시가지 2차 간판정비공사

사업개요

- 심사기관 : ○ ○ 군
- 심사일자 : 2011. 11. 17
- 사업규모 : 간판제작·설치 74개소, 기존간판 철거 144개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26,806		208,597	18,209	8.0%

주요 심사내용

- 디자인실사 인부임 조정
 - S/W시험사 → 컴퓨터S/W기사로 조정(제조부문 노임단가)
 - 186,776원/인 → 100,204원/인(△86,572원/인)
- 보드시트 도안 및 재단 품 조정
 - 특별인부(0.18인/m²), 보통인부(0.19인/m²) → 0.12인/m²
 - 31,851원/m² → 20,730원/m²(△11,121원/m²)
- 관급자재 내역 부가가치세 이중적용 삭제
 - 2,221,740원 → 0원(△2,221,740원)

심사 착안사항

- 간판제작 단가를 업체 표본조사 및 실거래 견적단가 적용
- 요율적용 오류 등 과다설계 검토

[물 품]

○○○ 및 나비조형물 제작·설치

사업개요

- 요청기관 : ○ ○ 군
- 심 사 일 : 2012. 4. 5
- 사업규모
 - 목 적 : ○○ 축제활성화 및 연중이용 가능 공간 구축
 - 규 모 : ○○○ 및 나비조형물 설치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5,000		31,237	3,763	10.8%

주요 심사내용

- 나비조각 금형비 노임명칭 및 단가 조정
 - 창작된 디자인에 대한 금속가공 행위는, 예술의 창작행위가 아닌 기능(직능)공의 영역으로, 조형공 노임적용 타당
 - ※ 적용단가 : 조각기능사 200,000원 → 조형공 56,513
- 경비(제비율) 조정
 - 2012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 근거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2.03.07월 변경분 적용)

심사 착안사항

- 전문업체 견적처리로 노임을 임의 해석에 대한 오류 정정
- '12년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검토

IV 부 록

1.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2. 예정가격 작성 요령
3.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5.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6. 공사용 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7. 도내 자재 생산업체 현황
8. 계약심사 관련 추천 사이트

1.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전라남도규칙 제2848호(2008. 10. 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 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도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가. 도 본청의 과·담당관
 - 나. 도의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 다. 도 의회사무처
 - 라. 도내의 시·군
 - 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바. 도 지방공기업
 - 사. 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시·군의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재배정사업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시·군비사업에 한한다.

1. 공사분야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 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2. 용역분야

-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계약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구매) 사업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3.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도에 전라남도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계약 심사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

구 분	심사내용	심사대상 사업 범위	비고
공 사	원가심사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한함.
	저가심사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PQ심사 및 입찰과 낙찰자 결정은 해당부서 및 기관 에서 실시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 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 하는 경우	
용 역	원가심사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물 품 제조·구매	원가심사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별지 제1호 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	· 상 호 : · 책임기술자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 (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3.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각각의 내역서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3호 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천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4호 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천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 첨부 서류			
1. 원가 계산서 1부.			
2. 산출기초 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 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사양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산출금액		천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산출금액	천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 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7호 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 번호
(최초)계약금액		천원	(직전) 계약금액	천원
사업 개요				
설 계 자	업체명		대 표 자	
	책 임 기술자		전화번호	
<p>○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p> <p>-</p> <p>-</p> <p>-</p>				
<p>○ 첨부 서류</p> <p>1. 설계변경이유 조서</p> <p>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p> <p>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p>				

【별지 제8호 서식】

공사 저가 심사요청서

공사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공사 추정금액	천원		
설계자	상호 : 책임기술자 :	대표자 : (전화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공사개요			
○ 첨부 서류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및 입찰자별 가격 투찰 현황			
2. 저가심사에 필요한 기본자료 (설계내역서,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등)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2.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 3. 22)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예규는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원가검토 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가.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 (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 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 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법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감)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1) 시·도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야 한다.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그 밖의 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 가. 작성절차
 -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 1억 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 원(임차·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 3) 시행령 제43조·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4) 시행령 제81조·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5)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역별·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수의 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천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천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천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천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천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 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실적공사비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1)", "2)"에 가격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 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 3) 경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수익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1) 기본급 :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
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 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 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 21)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정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산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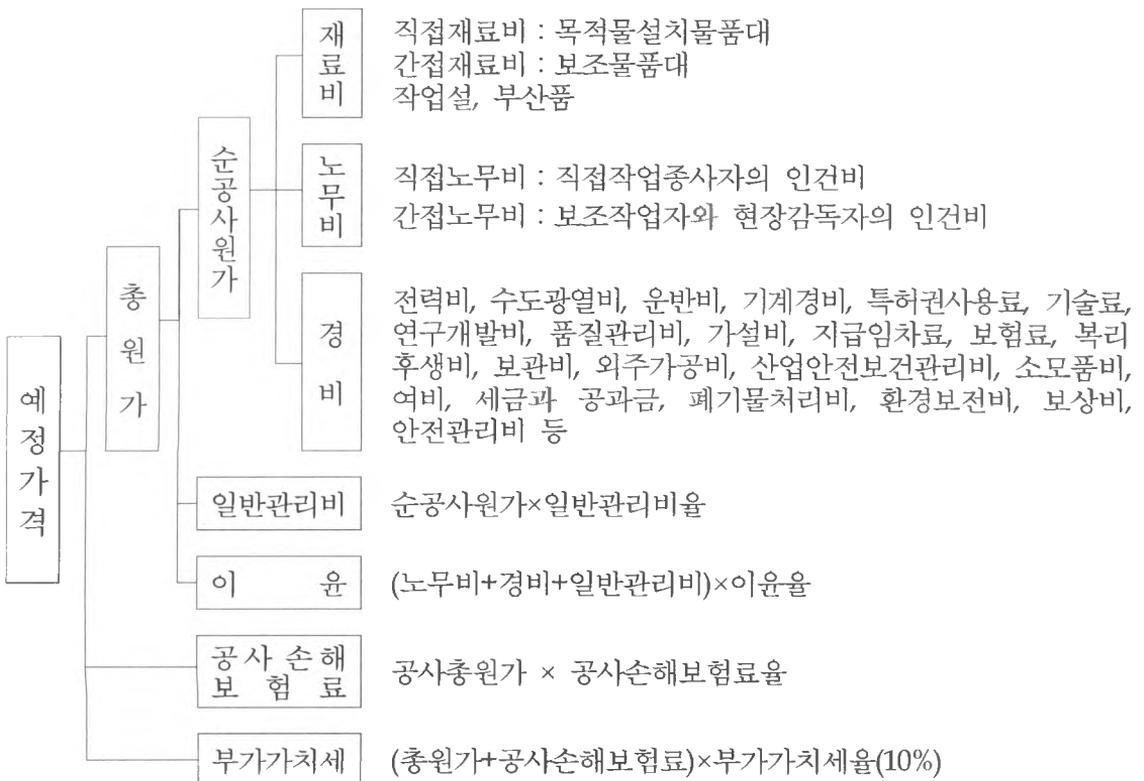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 (1)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 (2)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 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 (4)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 (1)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인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나)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다)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라)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 (3) 직접·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2)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 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0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15.0	
공사규모별	50억 원 미만	14.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15.0	
	300억 원 이상	16.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5.0	
	12개월 이상	17.0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 반재료 ·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 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 (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 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그 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 25)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 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 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

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 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의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상대방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 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설계·감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행정안전부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해양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지식경제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부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 환경보전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8항, 동시행규칙 제51조 안전관리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칙

1. 의의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 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 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4.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실적공사비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6.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 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 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 1) 간접노무비
- 2) 산재보험료
- 3) 고용보험료
-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5) 안전관리비
- 6) 환정보전비
- 7) 국민건강보험료
- 8) 국민연금보험료
- 9) 그 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 10) 그 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밖의 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용역기관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 마.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 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 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그 밖의 물품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12년 기준)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2,915,894원
연 구 원	월 2,235,867원
연구보조원	월 1,494,604원
보 조 원	월 1,120,99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위 단가는 2012년도 기준단가이며, 2013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위 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구 분 \ 기 준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 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 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 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 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 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이 윤 ()%				
	총 원 가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공사기간 :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분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별지 제4호 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업」의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시·도 경리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율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3.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국토해양부고시 2010-1102호(2010. 12. 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공사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감리용역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뜻)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관리방식”이란 건설현장의 공사관리방식을 말하며, 직접감독, 책임감리, 부분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로 한다.
2. “직접감독”이란 해당 건설공사 발주청 소속 직원이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절차) ① 발주청의 장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공사관리 인력 소요량에 대하여 발주청의 역량을 검토한 후 공사관리방식의 순차적 검토를 통하여 공사의 특성과 발주청의 역량에 맞는 공사관리방식을 선정하여 공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발주청의 장은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순서는 별표 1과 같다.

1. 공사발주물량 산출
2. 공사특성 평가
3. 소요인력 산출
4. 가용인력 산정
5. 가용인력의 역량 평가
6. 공사별 공사관리 방식 선정
7. 공사관리 방식에 따른 발주청 인력 투입 기준 설정
8. 공사관리 방식 배분에 따른 소요 인력 산정
9. 소요인력과 가용인력의 비교 후 공사별 공사관리 방식 조정
10. 공사별 최종 공사관리 방식 선정

제5조(공사 발주물량 산출 및 공사특성 평가) ① 공사발주 물량은 매년 사업 계획 수립 시 별표 2에 따라 책임감리 의무 대상 사업과 그 외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사업의 추가, 취소 등으로 공사 발주 물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 발주물량을 재산출할 수 있다.

② 공사 특성 평가는 시설물 특성 60퍼센트, 사업여건 40퍼센트의 비율로 평가하되, 발주청의 여건에 따라 배점 기준을 10퍼센트 이내에서 조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③ 시설물 특성은 공중 난이도와 공사 난이도를 검토하여 별표 3과 같이 평가한다.

④ 사업여건은 공사비 규모·공사기간·민원발생 가능성·유사 공사 경험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소요인력 산정 및 가용인력 역량평가) ① 발주청의 장이 관리해야 할 공사 물량에 대한 공사관리 소요인력은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해당 공사 규모 및 난이도를 검토하여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② 공사관리 소요인력 산정 시 연도별 공사관리 소요인력은 별표 6의 양식에 따라 산정하며, 연도별 공사관리 소요인력은 총공사비에 대한 연도별 예산의 비율로 결정한다.

③ 공사감독 가용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출한다.

1. 공사감독 가용인력 수는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 직렬 별로 구분하여 산정 하되 기술직 중 공사발주 및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근무자로 하며, 보직자와 일반 서무업무 등 일반 관리자는 제외한다.

2. 사업행정, 예산, 계약, PQ 심사 등 발주청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 업무자의 비중은 발주청의 업무 내용에 따라 공사감독 업무와 내부업무의 비중을 계산한 후 발주청 별로 운용비율을 결정한다.

3. 가용인력은 공사감독 가능인력 수에 공사감독 업무 비중을 곱하여 산출하며, 연도별 공사감독 가능인력은 가용인력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다.

④ 가용인력 역량평가는 경력과 직급을 검토하여 평가하며, 경력등급 환산점수와 직급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값으로 결정한다. 가용인력 역량 평가 시 경력, 직급, 등급별 환산점수, 최종등급 분류, 보정계수 등은 별표 7에 따른다.

제7조(공사관리방식 배정) ① 공사별 공사관리방식은 공사특성 및 가용인력을 검토하여 1차적으로 각 공사에 대하여 적합한 공사관리방식을 배정한다.

② 공사난이도에 따른 공사관리방식은 별표 8에 따라 그룹별로 최선, 차선의 공사관리방식을 정하되, 해당 발주청의 역량 및 여건에 따라 발주청별로 기준을 수립하도록 한다.

③ 인력 투입은 직접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등 공사관리방식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감리원 배치기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치하되 발주청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발주청은 시공감리의 경우 전체 공사관리 인력 중 30퍼센트의 인력을, 검측감리의 경우 전체 공사관리 인력 중 60퍼센트의 인력을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영 제5조에 따른 부분책임감리의 경우 인력 배치기준은 부분책임감리 부분과 동일한 규모 및 난이도의 책임감리 시 감리원 배치기준을 준용하며, 부분책임감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다.
3. 책임감리 시 발주청의 지원업무수행자 투입 기준은 0.2~0.4인/건 이내에서 발주청별로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해당연도 예산 규모의 변동, 저가 낙찰, 공정추진이 시급한 현장 등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인력 투입 기준을 수립 후 적용 한다.

④ 공사별 공사관리방식 선정 후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규공사에 대한 공사관리소요인력을 산정하며, 총 소요인력은 기존 진행 중인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신규공사에 투입될 인력을 합하여 산출한다.

제8조(공사별 공사관리방식 확정) ① 공사별 공사관리방식 확정은 총 소요인력 검토 결과 공사감독 가용인력을 비교하여 소요인력이 가용인력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공사관리방식을 조정하여 발주청의 인력이 적정하게 투입되는 공사관리방식을 확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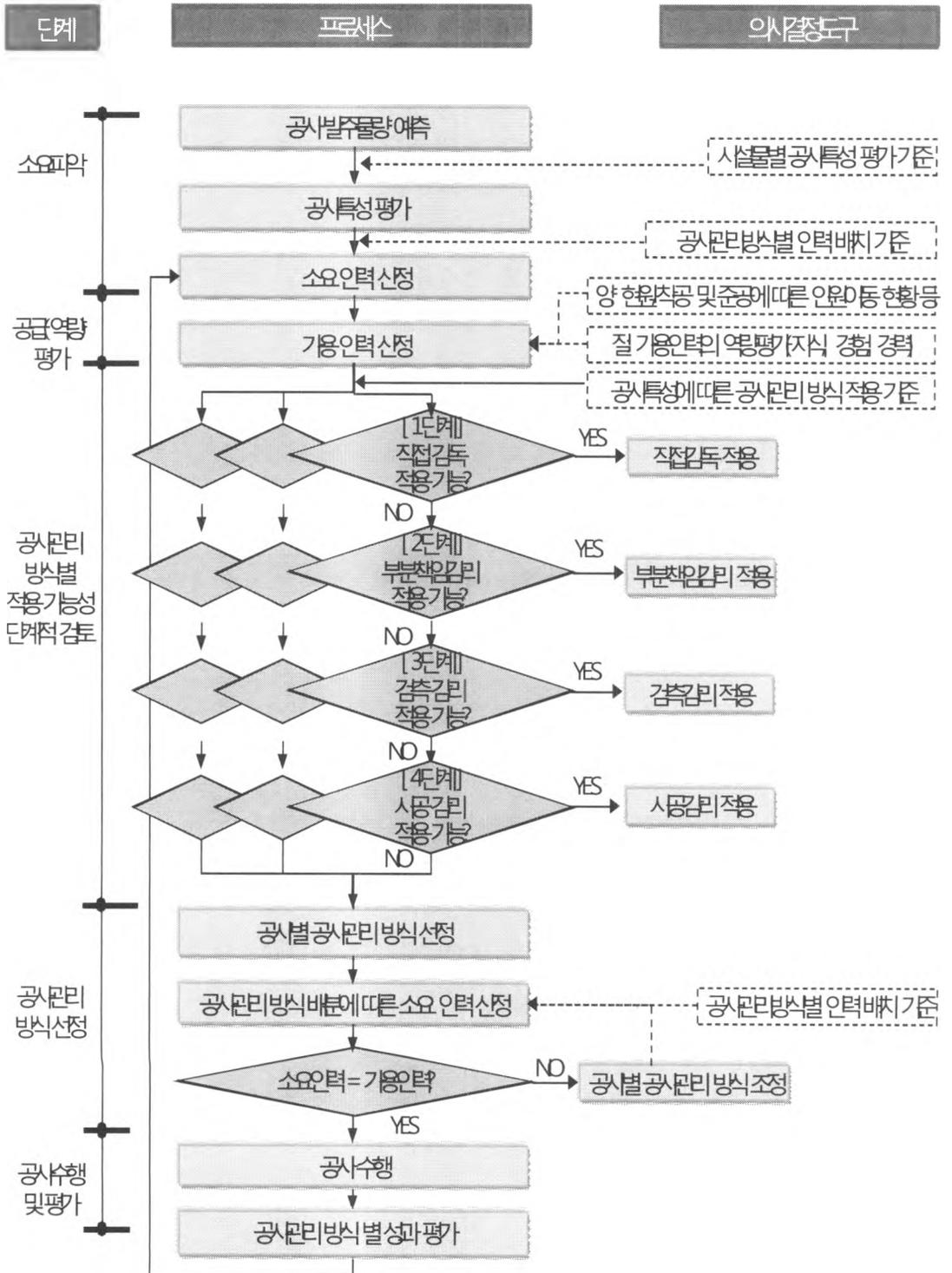
② 공사별 최종 공사관리방식은 책임감리 의무 시행 대상 이외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관리방식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리용역 적정성 검토 절차



[별표 2] 공사 발주물량 검토서

총 계 : OO 건 000억원					
책임감리의무대상 사업 소계 : OO 건 000억원					
공사명	발주시기	공사기간	공사비	공종	비 고
공사 1					
공사 2					
...					
공사 N					
책임감리의무대상 이외 사업 소계 : OO 건 000억원					
공사명	발주시기	공사기간	공사비	공종	비 고
공사 1					
공사 2					
...					
공사 N					

주1) 발주시기는 공사입찰 공고 시점으로 한다.

주2) 공사기간은 공사착공부터 예정준공일까지로 한다.

[별표 3] 시설물특성 평가 배점 기준

평가기준	배점 기준	비 고
공중 난이도 (30)	복잡 : 30 보통 : 20 단순 : 10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69) 상의 공중난이도 적용
공사 난이도 (30)	1종 : 30 2종 : 20 기타 : 10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 법령상의 시설물 분류 기준 활용

[별표 4] 사업여건 평가 기준

구 분	평가 기준		
	배 점	10	5
① 공사비 규모 (10)	• 3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100억원 미만
② 공사기간 (10)	• 3년이상	• 1년이상 3년미만	• 1년미만
③ 민원 발생 가능성 (10)	•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	• 민원발생 가능성이 통상적인 수준이다.	•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다.
④ 유사 공사 경험 (10)	• 수행한 경험이 전혀 없다.	•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경험이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주로 수행하는 종류의 공사이다.

[별표 5] 소요 인력 산정

시 기	규 모 (공사비)	공종 난이도	공사기간	공사관리 필요인력(인·월)	비 고
공사 1					
공사 2					
공사 3					
...					
공사 N					
계					

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의 공종 난이도 및 감리원 배치 기준

[별표 6] 연도별 소요 인력 산정

공사명	총공사비 (공사기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공사 1	OOO억원 (‘10~’12)	연도별 공사비		불확실	불확실	
		연도별 공사비에 따른 필요인력량	OO인월			
공사 2	OOO억원 (‘11~’13)	연도별 공사비		불확실	불확실	불확실
		연도별 공사비에 따른 필요인력량				
...						
...						
공사N	OOO억원 (‘10~’13)	연도별공사비		불확실	불확실	불확실
		연도별 공사비에 따른 필요인력량	OO인월			
계			OO인월	불확실	불확실	불확실

[별표 7] 가용인력 역량 평가 기준

1. 경력이란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건설기술 및 관리 관련 경력 년수를 말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6이상	16미만 12이상	12미만 8이상	8미만 4이상	4미만
A	B	C	D	E

2. 직급이란 해당 발주청내 직급을 의미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

공무원	6급 이상		7급	8급	9급
공기업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등 급	A	B	C	D	E

3.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와 같다.

등 급	A	B	C	D	E
환산점수	10	8	6	4	2

4. 가용인력 역량의 최종 등급은 경력과 직급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경력등급 환산 점수와 직급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값으로 결정하며, 점수에 따른 최종 등급의 분류는 아래와 같다.

최종등급	A	B	C	D	E
최종점수	8이상 10미만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2초과 4미만	2이하

5. 발주청 인력 투입 시 발주청 인력의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리원의 등급에 준하여 투입하도록 한다.

발주청 직원의 등급	A	B	C	D	E
감리원 등급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6.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은 감리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가용인력 산정 시 아래와 같이 보정하여 산정한다.

구 분	A, B	C, D	E
보정계수	1.2	1.0	0.8

[별표 8] 공사관리 방식 선정 기준

구 분	점수분포	공사관리방식	
		최선	차선
A그룹	70점 이상	책임감리	시공감리
B그룹	60~70점	시공감리	검측감리 또는 책임감리
C그룹	50~60점	검측감리	직접감독 또는 시공감리
D그룹	50점 미만	직접감독	검측감리

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77호(2011. 4.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로부터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경우에는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공상세도작성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의 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③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3.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 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 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 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동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 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 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제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제13조(요율) ①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
 -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배
 -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배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배
 -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효율의 1.2배
-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효율의 1.09배
-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효율의 1.12배

제14조(업무범위) 공사비효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 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 라.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 마.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 바.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 사.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 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 자.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 차.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 카.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 타. 설계설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 파.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2. 실시설계

-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 라.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 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 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 아. 상세공정표의 작성
- 자.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 차.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 3. 공사감리
 -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나. 시공도 검토
 -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 마.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 바.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제15조(요율조정)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4. 제출 자료의 수량 등

제1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17조(추가업무비용) ①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3.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6.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7. 문화재 지표조사
8.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9.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10.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11.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12.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13.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15.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16.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17.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18.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19. 홍보영상 제작
20.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2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

③ 제2항제2호부터 13호까지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다. 제21호의 비용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비용 산출에 준하여 정한다.

제18조(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제19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직선보간법 산정식〉

$$y = y1 - \frac{(x - x2)(y1 - y2)}{x1 - x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4장 시공상세도작성비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2조(업무범위)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제23조(예정수량 산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4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5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제24조(사후정산)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정수량을 정하고, 현장시공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 6에 따라 구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09호)을 적용한다.

[별표 1] 건설부문의 효율

공사비 \ 효율	업 무 별 효 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5천만원 이하	3.24	6.49	3.02	12.75
1억원 이하	3.04	6.07	2.85	11.96
2억원 이하	2.42	4.85	2.26	9.53
3억원 이하	2.22	4.43	2.06	8.71
5억원 이하	2.01	4.03	1.89	7.93
10억원 이하	1.77	3.55	1.66	6.98
20억원 이하	1.63	3.27	1.53	6.43
30억원 이하	1.57	3.15	1.48	6.20
50억원 이하	1.54	3.09	1.45	6.08
100억원 이하	1.51	3.01	1.41	5.93
200억원 이하	1.46	2.91	1.37	5.74
300억원 이하	1.45	2.90	1.35	5.70
500억원 이하	1.41	2.84	1.33	5.58
1,000억원 이하	1.40	2.79	1.30	5.49
2,000억원 이하	1.38	2.76	1.28	5.42
3,000억원 이하	1.37	2.72	1.25	5.34
5,000억원 이하	1.34	2.70	1.23	5.27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효율 $= 2.75 \times (\text{공사비})^{-0.0265} - 0.006822$ 실시설계효율 $= 5.0 \times (\text{공사비})^{-0.0229}$ 공사감리효율 $= 3.4816 \times (\text{공사비})^{-0.0386} - 0.00084$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인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효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2] 통신부문의 효율

공사비	요율	업 무 별 요 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5천만원 이하		4.09	12.28	2.70	19.07
1억원 이하		3.84	11.55	2.53	17.92
2억원 이하		3.06	9.18	2.02	14.26
3억원 이하		2.79	8.38	1.84	13.01
5억원 이하		2.54	7.59	1.68	11.81
10억원 이하		2.24	6.71	1.48	10.43
20억원 이하		2.07	6.16	1.36	9.59
30억원 이하		1.99	5.95	1.31	9.25
50억원 이하		1.95	5.85	1.29	9.09
100억원 이하		1.89	5.70	1.25	8.84
200억원 이하		1.84	5.53	1.22	8.59
300억원 이하		1.82	5.49	1.21	8.52
500억원 이하		1.80	5.37	1.18	8.35
1,000억원 이하		1.76	5.30	1.16	8.22
2,000억원 이하		1.74	5.20	1.14	8.08
3,000억원 이하		1.72	5.11	1.13	7.96
5,000억원 이하		1.70	5.05	1.11	7.86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3.16 \times (\text{공사비})^{-0.023} - 0.000634$ 실시설계요율 $= 12.02 \times (\text{공사비})^{-0.0323}$ 공사감리요율 $= 2.3088 \times (\text{공사비})^{-0.0271} - 0.00262$			

비고 1. “통신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정보통신부문과 산업부문의 소방설비 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와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 효율

공사비 \ 효율	업 무 별 요 율 (%)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
5천만원이하	3.12	8.01	11.13
1억원 이하	2.91	7.46	10.37
3억원 이하	2.60	6.66	9.26
5억원 이하	2.47	6.32	8.79
10억원 이하	2.30	5.89	8.19
30억원 이하	2.05	5.26	7.31
50억원 이하	1.95	4.99	6.94
70억원 이하	1.88	4.82	6.70
100억원 이하	1.81	4.65	6.46
300억원 이하	1.62	4.16	5.78
500억원 이하	1.54	3.94	5.48
700억원 이하	1.49	3.81	5.30
1,000억원 이하	1.43	3.67	5.10
3,000억원 이하	1.28	3.28	4.56
5,000억원 이하	1.21	3.11	4.32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19.2151 \times (\text{공사비})^{-0.1025}$ 실시설계요율 $= 49.2703 \times (\text{공사비})^{-0.1025}$		

비고 1. “산업플랜트”란 전기전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트와 유기화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화학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2. 5,000억원 초과인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효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4] 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

공사비 \ 요율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단순	보통	복잡
1억원 이하	1.31	1.46	1.61
2억원 이하	1.15	1.28	1.41
3억원 이하	1.06	1.18	1.30
5억원 이하	0.96	1.07	1.18
10억원 이하	0.85	0.94	1.03
20억원 이하	0.74	0.82	0.90
30억원 이하	0.68	0.76	0.84
50억원 이하	0.62	0.69	0.76
100억원 이하	0.54	0.60	0.66
200억원 이하	0.48	0.53	0.58
300억원 이하	0.44	0.49	0.54
500억원 이하	0.40	0.44	0.48
1,000억원 이하	0.35	0.39	0.43
2,000억원 이하	0.31	0.34	0.37
3,000억원 이하	0.28	0.31	0.34
5,000억원 이하	0.25	0.28	0.31
5,000억원 초과	단순공종요율 $= 45.5535 \times (\text{공사비})^{-0.1924}$ 보통공종요율 $= 50.6135 \times (\text{공사비})^{-0.1924}$ 복잡공종요율 $= 55.6734 \times (\text{공사비})^{-0.1924}$		

비고. 5,000억원 초과인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5]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작성 난이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단 순	$\{(0.24 \times \text{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 \times \text{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보 통	$\{(0.34 \times \text{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 \times \text{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복 잡	$\{(0.20 \times \text{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 \times \text{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91 \times \text{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별표 6] 공종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난이도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철 근 공	가. 부재별 철근 배근 전개도 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① 배근상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②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 앙거표준도, 웅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 후 결정) ③ 정·부철근의 유효간격 및 철근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서 및 고임대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④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 ⑤ 철근 구부리기 상세, 철근재료표 (철근개수, 형상과 규격, 길이, 중량포함), 철근의 위치	복 잡
토 기	가. 흙막기 (절토) ① 소단폭원, 절취고 및 구배 (절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위치	단 순
	나. 흙쌓기 (성토) ① 흙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②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성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단 순
	다. 다 짐 ① 노체 노상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② 토사 다짐순서도	단 순
불 량 토 공 치 환 공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중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복 잡
지 개 량 반 공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중단, 횡단방향):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복 잡
	나. PE, PET 매트	복 잡

2012 계약심사 사례집

	<p>사. 옹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배수구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② 문양거푸집 설치도 ③ 조립 철근 설치상세도 ④ 시공이음 위치 및 상세도(Water Stop etc..) <p>아. 밸브 박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배관구 설치상세도 ② 출입구 뚜껑 및 그라이팅(Grating) 설치상세도 	<p>복 잡</p>
	<p>자. 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맹암거 설치계획도 ② 절.성토 경사면 녹화계획도 ③ IC 및 정선 구간 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④ 절.성토 경사면보호를 위한 소단 및 사면배수(도수)계획도 	<p>단 순</p>
<p>포장공</p>	<p>가.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센서라인 설치계획도(위치, 간격)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p>보 통</p>
	<p>가. 기 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 에서의 가시설도 <p>나. 교대, 교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공이음부 처리도 ② 교좌면 : 받침(shoe)별 교좌면 시공계획도(E.L표기) ③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Shoe)의 유간 설치 계산서 ④ 확장공사 시 가시설 설치도 ⑤ 교량받침 교체위한 잭(Jack)설치도 ⑥ 슬래브 배수처리 위한 교대주변 배수 처리도 ⑦ 교대배면 뒷채움 처리도 	<p>복 잡</p>
<p>교량공</p>	<p>다. 교량받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량받침 설치계획도 ②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 철근에 고정 또는 후시공 시 불력아웃 규격, 재료, 깊이 등을 명기) ③ 슬플레이트와 워 받침 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쌓기형 처리 등) 	<p>단 순</p>
	<p>라. 신축이음장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제품의 폭 ,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조정 등을 명기 -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불력아웃(Block out)폭, 두께 - 앵커철근 용접 시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폭 계산서 ②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p>보 통</p>
	<p>마. 강 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강교 제작계획서(각 부재의 절단 가공, 용접 검사 현도) ②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③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④ 강교부재 운반계획서(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⑤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p>복 잡</p>

	바. P.S.C BEAM교 ① P.S.C BEAM 구조도 (표준도 사용) ② 강제 거푸집 상세도 (표준도 사용) ③ 스큐(Skew) 종단, 편구배구간 설치계획도 ④ 전도방지 시설도 ⑤ 제작장 평면계획(Beam 배치) 및 바닥 조성(다짐, 배수)계획	보 통
	사. 바닥판 ① 배수구 설치계획도 (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멍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절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접수구 설치위치) ② 배수구멍 주변 철근보강 ③ 물 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④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 ⑤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라인 설치구간 세부계획도 ⑥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 배근도	보 통
터널공	가. 굴 착 ① 굴착순서 및 단면도 ②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③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④ 시·중정부의 중심좌표 및 E.L 확인 ⑤ 천공패턴 ⑥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⑦ 발파용 매트나 덮개 표준도	보 통
	나. 계 측 ①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②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단 순
	다. 배수구 및 공동구 ① 시공 중 배수처리 계획도 ②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③ 포장 E.L과 비교 공동구 상단 E.L	보 통
	라. 라 이 닝 ①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②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③ 라이닝과 개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④ 철제 동바리	복 잡
	마. 타 일 ①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보 통
부대공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종단구배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보 통

	<p>나. 중앙분리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기초 및 구체 기계 시공서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보 통		
	<p>다. 울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설치계획도 ③ 울타리 설치계획도 	단 순		
	<p>라. 기 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업소 시설 상세도 ② 노면 표지 상세도 ③ 안전시설 상세도 	보 통		
가시설공	<p>가. 흠막이 가시설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H-파일, Sheet-파일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상세(필요시), 횡토압 지지방법 (H-파일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② 흠막이 공법 표기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④ 지장물로 인한 가시설 변경시 ⑤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제원 및 상세 ⑥ 형태별 단면도 ⑦ 가시설 상세도, 시공순서도, 수직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보 받침 및 연결 - 보강재(Stiffener) 설치 - 띠장 우각부 연결 - 띠장 연결 - 파일 연결 -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및 C형강 설치 - 주정보 브레이싱 - 피스 브라켓 제작 - 토류용 앵글설치 - 버팀보 제작 - 띠장 설치 - 잭(Jack) 설치 - 수직 피스제작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 복공 설치도 - 장비통로 및 작업구 버팀보 보강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주정보 X-브레이싱 - 보조파일 - 사보강재 - 화타빼기 - 중간말뚝 방수처리 - H-파일 개구부 마감 - 보갈이 - 진입부 상세 - U볼트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버팀보 연결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보 받침 및 연결 - 보강재(Stiffener) 설치 - 띠장 우각부 연결 - 띠장 연결 - 파일 연결 -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및 C형강 설치 - 주정보 브레이싱 - 피스 브라켓 제작 - 토류용 앵글설치 - 버팀보 제작 - 띠장 설치 - 잭(Jack) 설치 - 수직 피스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 복공 설치도 - 장비통로 및 작업구 버팀보 보강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주정보 X-브레이싱 - 보조파일 - 사보강재 - 화타빼기 - 중간말뚝 방수처리 - H-파일 개구부 마감 - 보갈이 - 진입부 상세 - U볼트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버팀보 연결 	복 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보 받침 및 연결 - 보강재(Stiffener) 설치 - 띠장 우각부 연결 - 띠장 연결 - 파일 연결 -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및 C형강 설치 - 주정보 브레이싱 - 피스 브라켓 제작 - 토류용 앵글설치 - 버팀보 제작 - 띠장 설치 - 잭(Jack) 설치 - 수직 피스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 복공 설치도 - 장비통로 및 작업구 버팀보 보강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주정보 X-브레이싱 - 보조파일 - 사보강재 - 화타빼기 - 중간말뚝 방수처리 - H-파일 개구부 마감 - 보갈이 - 진입부 상세 - U볼트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버팀보 연결 			
	<p>나. 가 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파일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보 통		
	<p>다. 가 시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 시설, 안전 도색 ② 가설건물 배치현황 	단 순		

	라. 가도 및 가울막이 ① 연장, 폭원 ② 접속처리도(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③ 배수시설도	보 통
	마. 기 타 ①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 시설 ③ 상판가설장비(MSS, FSM, FCM) 설치계획도, 가설장비 재료, 규격, 형상, 가설장비 운영(작동)	보 통
상하수 도공	가. 공통사항 ①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단 순
	나. 관점합부설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②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 ③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장, 규격, 토피, 경사	보 통
	다. 기타 ① 곡관보호공 상세도	단 순
옹벽 및 기타	가. 옹 벽 ①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 ③ 배수구멍 위치도 ④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⑤ 집수정과의 연결도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⑦ 조립 철근 상세도	복 잡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 ② I.L.M, P.S.M, F.C.M. 사장교 등 특수교량의 경우 시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 ③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보 통
교통안전 시설	가. 표지판 ① 표지판 설치계획도 (종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②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③ 앙카볼트 시공계획	단 순
	나. 교통처리계획 ①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② 차선변경에 따른 단계별 복구계획	보 통
기타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② 공사용진입로 및 유지관리도로 위치, 연장, 폭원	보 통

비고 1. 다만, 공장에서 제작하고 별도의 전문관리를 시행중인 강교 시공상세도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특수공종 및 기타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작성 난이도는 발주청과 상의하여 정한다.

5.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750호(2011. 12. 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9조의3 제1항 각 호의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를 발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자료의 요청) ① 건축사는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자료, 건축대지증명 또는 환지증명, 대지측량도와 지질또는지내력검사서
2. 대지에 관한 급배수, 전기, 가스 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3. <삭 제>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요청에 응하지 않아 건축사가 요청자료를 직접 입수제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저작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축사의 업무범위

제5조(업무의 범위) 제1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업무
 - 가. 기획업무
 - 나. 건축설계업무
 - 1) 계획설계
 - 2) 중간설계
 - 3) 실시설계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작업무

- 1) 리모델링 설계업무
- 2) 인테리어 설계업무
- 3)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 4) 3D 모델링업무
- 5) 모형제작업무
- 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업무
- 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 8) 흙막이 상세도 작성업무(굴토깊이 10m이상)
- 9) 상세시공도서 작성
- 10) 각종 심의 대응 업무
- 11)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업무
- 12)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 13)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IBS)의 인증 관련 설계 업무
- 14)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업무

2. 공사감리업무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다.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책임감리업무

라.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 1)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업무
- 2)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
- 3)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따른 설계감리업무

3.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CM)업무

4.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공원계획 등의 업무중 건축물과 건축물·도로·녹지 등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물과 주변시설들의 용도·규모·형태·색채 등의 설계기준을 작성하는 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외에 발주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 나.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다.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 라.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업무
- 마.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 바. 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 업무(Life Cycle Cost Analysis)
- 사. 건축물의 분양관련 지원업무
- 아. 기타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

제6조(설계업무) ① 건축사는 건축법,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호가목의 "기획업무"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 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로서 그 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③ 제5조제1호나목의 설계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설계"는 다음과 같이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 설계도서의 작성 내용은 별표2에 따른다.

가.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제2항의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다.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 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④ 제5조제1호다목의 "사후설계관리업무"란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

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건축법 제7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를 포함한다.

⑤ 건축사가 발주자로부터 제5조제1호나목의 건축설계업무를 일괄하여 위탁을 받거나 분리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은 건축설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구 분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계획설계	20	25
중간설계	30	35
실시설계	50	60
계	100	120

2. 타법령에 따른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 건축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구 분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계획설계	25	30
중간설계	30	35
실시설계	45	55
계	100	120

제7조(공사감리업무) ① 건축사는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신청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건축공사감리를 완료한다.

② 제5조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공사감리업무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이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제3장 건축사업무 대가의 산정

제8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2. 공사비요율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② 발주자는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서 별도의 대가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의 변동, 설계 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계약에 따라서 특별히 정한 경우

제10조(종별 구분과 도서작성 구분) ① 건축설계 및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종별은 별표3과 같이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

② 건축설계 대가요율 별표4를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도서작성 구분은 소규모 건축물 등과 같이 인·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으로 하며, 공종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급으로 하며, 중급에 비하여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급으로 분류하고 도서작성구분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도서의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① 제5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획업무의 대가는 별표1의 기획업무내용에 따라 제2항에 따라서 산출된 설계대가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산정한다.

② 제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축설계업무의 대가는 별표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다.

1. 하나의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각기 규모 및 구조가 다른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설계업무대가는 각 동마다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한 대가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일한 설계에 따라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설계업무의 대가는 다음 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text{대 가} = A(1 + 1/2 + 1/3 \dots + 1/n)$$

A : 1동의 건축설계 대가

n : 동일한 설계에 따른 동수

3. 1동의 건축물에 2이상의 용도가 혼용되어 별표3에서 정한 건축물의 종별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종별에 해당하는 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가진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하며, 각 종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한다.

4. 전통양식설계업무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별표3에 따른 건축물의 종별구분은 제3종 중급을 적용한다.

③ 제5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④ 제5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무대가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라목 1) 및 2)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서 산정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한다.
2. 제5조제1호라목 3) 내지 11)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3. 제5조제1호라목 12)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가. 최우수등급 : 대가의 9.5%

나. 우수등급 : 대가의 9%

다. 우량등급 : 대가의 8.5%

라. 일반등급 : 대가의 8%

4. 제5조제1호라목 13)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지능형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가. 1등급 : 대가의 7%

나. 2등급 : 대가의 6.5%

다. 3등급 : 대가의 6%

라. 4등급 : 대가의 5.5%

마. 5등급 : 대가의 5%

5. 제5조제1호라목 14)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가. 1등급 : 대가의 7.5%

나. 2등급 : 대가의 7%

다. 3등급 : 대가의 6.5%

라. 4등급 : 대가의 6%

마. 5등급 : 대가의 5.5%

6. 하나의 건물에 동일한 설계에 따라 제5조제1호라목 12)부터 14)까지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중 2개 이상의 인증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추가 대가 요율은 다음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추가설계대가 요율} = A + 1/2 B + 1/3 C$$

A :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상위값

B :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차상위값

C :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하위값

⑤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면적, 구조, 용도, 면적, 설비, 내·외장재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12조(건축설계업무 대가의 지불방법) 발주자는 건축사에게 제6조제5항에 따른 건축설계의 단계별 업무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13조(건축설계업무대가의 증액) 건축설계업무대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된 대가에 건축설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건축사에게 건축설계를 위탁하되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조경 등을 분리수행 하도록 위탁하고 건축사에게 건축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전체를 종합 조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리수행 하도록 위탁한 설계대가의 20%를 증액한다.
2. 건축설계도서의 작성에 있어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범위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증액한다.
3. 외국에서 건축하는 건축설계업무의 경우에는 각 국가의 현지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증액한다.
4. 발주자의 요청으로 외국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를 함으로써 업무가 추가되거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증액한다.

제14조(공사감리업무의 대가산정) ① 제5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감리업무 대가는 별표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5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감리업무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15조(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의 대가산정) 제5조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16조(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별표4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서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제17조(공사비 5,000억원 이상의 요율) 공사비 5,000억원 이상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서 산출한다.

- 평균급여액 : 설계·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건축사, 건축사보, 보조원, 사무원 등의 평균 급여액
- 제비율 : 제18조에서 정하는 제경비와 창작 및 기술료를 합산한 비율

제18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는 다음 산정 방법에 따라서 산출한다.

대 가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및기술료

1.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가.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축사등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노임단가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서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나.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건축주의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2.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부터 120%까지로 계산한다.
3. "창작 및 기술료"라 함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기획 및 창작, 건축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부터 40%까지로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기준의 폐지)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270호, 2002.10.15)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859호, 2009.9.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50호, 2011.12.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획업무

업무의 내용			대가의 구분		
			I	II	III
규 모 검토서 (공간 계획)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	○	○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	○	○
	대지중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	○	○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각층 평면도		○	○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	○	○	
현장조사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	○	○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	○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	○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	○
설계지침서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	○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	○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
프로젝트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규모, 층수, 용도비교				○
	마감재, 시설비교				○
	공사비 비교				○

※대가의 구분 : I - 3%, II - 5%, III - 8%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①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건축	공사비 개산서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
	법규검토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	○
		설계구상안	○	○	○
	건축계획서	설계개요	○	○	○
		배치계획		○	○
		평면계획		○	○
		입면계획		○	○
		단면계획		○	○
		외장재료 비교 분석			○
	모형	Sketch 또는 Study Model		○	○
	건축도면	배치도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각층 평면도	○	○	○
		입면도(2면 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	○	○	
심의 도서	심의대상인 경우			○	
구조	구조계획서	구조계획개요		○	○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심의 도서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
기계	기계설비 계획서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	○
		기계설비 계획개요		○	○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
	개략 공사비 추정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전기	전기설비 계획서	해당 법규 검토		○	○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	○
		추정 부하 산정			○
	개략 예산 검토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토목	토목계획서	개략 흙막이 계획서			○
		흙막이 계획도			○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
		예상공사비 계산서			○
조경	조경계획서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
		식재 계획도		○	○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	
방재	심의 도서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

②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
	공사비 개산서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
	건축 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	○
		배치계획			○
		주차 및 동선계획			○
	평·입·단면 계획			○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	○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	○
	주차 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	○
	각층 및 자봉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	○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 외부마감재료	○	○	○
	단면도 (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	○	
투시도	투시도 또는 조감도		○	○	

2012 계약심사 사례집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 세 도	수직 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
		계단평면·단면 상세도			○	○
		주차경사로 평·단면상세도				○
		주차리프트 평·단면상세도				○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입·단면도			○	○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	○
	천정도	천정 평면도				○
	창호도	창호 평면도				○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
	기타	정화조	정화조 평면·단면도		○	○
용량 계산서				○	○	○
특수 분야 계획 검토		차음·방음, 방진				○
		무대·조명				○
		전시·미술장식품				○
		분수				○
		주방				○
음향					○	

나. 구 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구조 계산서			○	○
	설계 설명서			○	○
도면	기초 일람표		○	○	○
	구조 평면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	○
	가구도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
	기둥 일람표		○	○	○
	보 일람표		○	○	○
	슬래브 일람표		○	○	○
	옹벽 일람표			○	○
	계단배근 일람표			○	○
	잡배근 일람표				○
	주심도			○	○

다. 기 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	○	
	개략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	
	에너지 심의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	
	소방시설 계획서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	○	○	
도면	도면 목록표			○	○	
	소방 설비도	해당 소방관련 설비	○	○	○	
	장비 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	
	계통도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	○
			DUCT설비 계통도		○	○
			위생설비 계통도		○	○
			소화 설비 계통도	○	○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
			DUCT설비 평면도			○
			위생, 설비 평면도			○
			소화 설비 평면도	○	○	○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	
	설비용 핏트 평면 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	○	○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	○		

라. 전 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전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공사비 계산서	공종별 단위 면적당 개략 공사비			○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서의 내용을 발전 확장		○	○
	각종 부하계산서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작성			○
	소방시설 계획표	각종 설치시설에 대한 계획표	○	○	○
도면	도면 목록표			○	○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
	계통도	전력 계통도		○	○
		조명 계통도			○
		통신 계통도			○
		소방 계통도	○	○	○
	평면도	조명 평면도			○
		소방 평면도	○	○	○
상세도	조명기구의 선정		○	○	

마. 토 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	○
	대지 종·횡 단면도		○	○	○
	토공사 계획도				○
	포장계획 평·단면도			○	○
	보도블럭 평면도				○
	담장 계획도				○
	우·오수배수처리 평·종단면도			○	○
상하수 계통도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	○	

바. 조경공사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조경 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	○	○
	식재 평면도			○	○
	단면도			○	○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축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	○	○	
	설개 개요		○	○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	
	각종 계산서		○	○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	○	
일반 도면	표지		○	○	○	
	도면 목록표		○	○	○	
	안내도		○	○	○	
	구적도		○	○	○	
	지적도		○	○	○	
	면적 산출표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배치도	1/100이상	○	○	○	
	주차 계획도	1/100이상		○	○	
	평면도	1/100이상	○	○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	○	○	
상세 도면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	○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	○	○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 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샷다 상세도	1/5~1/50			○	
		핏트 상세도	1/5~1/50			○	
		발코니 상세도	1/5~1/50		○	○	
		출입구 상세도	1/5~1/50		○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	○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	○	
		창호 평면도	1/5~1/50		○	○	
		창호 상세도	1/5~1/50			○	
		창호 입면도	1/5~1/50			○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	
		천정 상세도	1/5~1/50			○	
		부분 상세도	1/5~1/50			○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 패턴도	1/5~1/50			○	
		로비 전개도	1/5~1/50			○	
		주요실 전개도	1/5~1/50			○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	
	기타	정화조	건축용 평·단면도	1/5~1/100		○	○
			각종 설비도				○
			계산서				○
	특수분야 도면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별도대가업무		

나. 구조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	○	
	시방서		○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	
	구조 평면도		1/30~1/200	○	○	○
	구조 단면도		1/30~1/200	○	○	○
	기초일람표		1/30~1/100	○	○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0		○	○
	기둥 일람표		1/30~1/100	○	○	○
	보 일람표		1/30~1/100	○	○	○
	슬래브 일람표		1/30~1/100	○	○	○
	옹벽 일람표		1/30~1/100	○	○	○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0	○	○	○
	잡배근 일람표		1/30~1/100	○	○	○
	주심도		1/30~1/200	○	○	○
상 세 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1/30~1/50	○	○	○
		경사로 상세도	1/30~1/50	○	○	○
		코아 상세도	1/30~1/50	○	○	○
	접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5~1/50	○	○	○
		보접합 상세도	1/5~1/50	○	○	○
		BRACE접합 상세도	1/5~1/50	○	○	○
		DECK PLATE 설치도	1/5~1/50	○	○	○
		STUD BOLT 설치도	1/5~1/50	○	○	○
		ANCHOR BOLT 상세도	1/5~1/50	○	○	○
	잡 상세도		1/5~1/50			○
	가구도		1/5~1/50			○
	각부구조 상세도		1/5~1/50			○
	기타 상세도	보 OPENING 위치도	1/5~1/50			○
		캐노피	1/5~1/50			○
		파라펫	1/5~1/50			○
TRUSS		1/5~1/50			○	

다. 기 계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	○
	설계 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록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장비 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티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1/100이상	○	○	○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	○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 등에 대한 내용 등을 표시	1/100이상	○	○	○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1/5~1/50			○
	화장실확대평면 상세도	화장실 배관 등에 대한 확대평면	1/5~1/50			○
	저수조, 고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1/5~1/50			○
	설비용펄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1/50			○
	연도 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 등의 연도상세	1/5~1/50			○
	각종 장비 상세도		1/5~1/50			○
	자동제어도면 (별도)	구성도				○
		장비,밸브,관제점,패널 일람표				○
계통도 및 평면도					○	

라. 전 기

종 류	내 용	속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	
	각종 부하 계산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장비 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인입 배치도	전력 배치도	1/100이상	○	○	○
		통신 배치도	1/100이상	○	○	○
		소방 배치도	1/100이상	○	○	○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	○
		통신 계통도				○
		소방계통도			○	○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조명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통신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방범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소방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방송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상세도	조명기구 상세도	1/5이상			○
		설비용 핏트 상세도	1/5이상			○
		피뢰침 상세도	1/5이상			○
		접지 설비 상세도	1/5이상			○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1/5이상			○

마. 토 목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설계 설명서					○
도면	주요 평면도		필요축적	○	○	○
	대지중·횡 단면도		필요축적	○	○	○
	토공사 평·단면도		1/5~1/100		○	○
	흙막이 상세도	굴토깊이 10M 미만	1/5~1/50	○	○	○
	포장 상세도		1/5~1/50			○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1/5~1/100			○
	옹벽 평·단면 전개도		1/5~1/100	○	○	○
	옹벽 상세도		1/5~1/100	○	○	○
	담장 입·단면도		1/5~1/100			○
	담장 상세도		1/5~1/100			○
	방음벽 상세도		1/5~1/100			○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	○	○
	우·오수 배수 상세도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 (평면도, 중·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1/5~1/100			○

바. 조 경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배치도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1/100이상	○	○	○
	평면도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1/100이상		○	○
		포장계획 평면도	1/100이상		○	○
		시설물 평면도	1/100이상		○	○
	입면도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1/100이상		○	○
	상세도	포장 평·입·단면 상세도	1/10이상			○
		지주목 상세도	1/10이상			○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상세도	1/10이상			○
		조명등 상세도	1/10이상			○
플랜터 상세도		1/10이상			○	
시설물 상세도		1/10이상			○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

종 별	건축물의 종류
1 종 (단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 · 창고시설(하역장)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p>※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p>
2 종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탁시설 · 공장 ·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p>※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p>
3 종 (복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등)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

(단위 : %)

공사비	종 별	제 3 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도서의양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만원		11.83	9.86	7.88	10.75	8.96	7.17	9.68	8.06	6.45
1억원		11.11	9.26	7.41	10.10	8.42	6.74	9.09	7.58	6.06
2억원		8.87	7.39	5.91	8.06	6.72	5.38	7.26	6.05	4.84
3억원		8.09	6.74	5.39	7.36	6.13	4.90	6.62	5.52	4.41
5억원		7.58	6.31	5.05	6.89	5.74	4.59	6.20	5.17	4.13
10억원		6.48	5.40	4.32	5.89	4.91	3.93	5.30	4.42	3.54
20억원		5.97	4.97	3.98	5.42	4.52	3.62	4.88	4.07	3.25
30억원		5.76	4.80	3.84	5.23	4.36	3.49	4.71	3.92	3.14
50억원		5.65	4.71	3.77	5.14	4.28	3.42	4.62	3.85	3.08
100억원		5.50	4.59	3.67	5.00	4.17	3.34	4.50	3.75	3.00
200억원		5.33	4.44	3.56	4.85	4.04	3.23	4.36	3.64	2.91
300억원		5.29	4.41	3.53	4.81	4.01	3.21	4.33	3.61	2.89
500억원		5.19	4.32	3.46	4.72	3.93	3.14	4.24	3.54	2.83
1000억원		5.10	4.25	3.40	4.63	3.86	3.09	4.17	3.47	2.78
2000억원		5.03	4.19	3.35	4.57	3.81	3.05	4.11	3.43	2.74
3000억원		4.95	4.13	3.30	4.50	3.75	3.00	4.05	3.38	2.70
5000억원		4.88	4.07	3.26	4.44	3.70	2.96	4.00	3.33	2.66

주)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단위 : %)

공 사 비	제 3 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5천만원	2.46	2.24	2.02
1억원	2.32	2.11	1.90
2억원	1.85	1.68	1.51
3억원	1.70	1.54	1.39
5억원	1.57	1.43	1.29
10억원	1.35	1.23	1.11
20억원	1.24	1.13	1.02
30억원	1.20	1.09	0.98
50억원	1.18	1.07	0.96
100억원	1.14	1.04	0.94
200억원	1.11	1.01	0.91
300억원	1.10	1.00	0.90
500억원	1.08	0.98	0.88
1000억원	1.07	0.97	0.87
2000억원	1.05	0.95	0.86
3000억원	1.03	0.94	0.85
5000억원	1.02	0.93	0.84

주)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6. 공사용 자재 직접(분리)구매 제도

□ 개 요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중의 일부)'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 구매하여야 함(생산 단가 보장, 납품즉시 현금지급, 판로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 직접구매 대상범위

- (대상품목) 총 120개 : 고무발포단열재, 레미콘, 아스콘 등
- (대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종합공사는 20억원 이상 공사(전문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이상)로서
 -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에 해당되고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다음 품목은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① 친환경상품(친환경상품구매촉진법) ②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법)
 - ③ 에너지효율관리대상기자재(에너지이용합리화법)
 - ④ 특정열사용기자재로서 안전 및 성능에 대한 검사를 득한 제품(에너지이용합리화법)
 - ⑤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산업안전보건법)
- (예 외) 재난관련 긴급공사, 국방·국가안보관련 공사,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공사현장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18호(2011. 5. 18.)」 제22조의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동법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18호(2011.5.18)」 제22조(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지정), 제23조(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179, 2010.11.22)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 지정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24, 2011.8.5)
- * 관련 사이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법령정보

참고	관련 법률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 ①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품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 가.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 나.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0호(2009.11.22)」

제22조(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지정)

-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4조에 따라 경쟁제품을 선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경쟁제품 중에서 직접구매 품목을 선정하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임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1조제2항제2호나목의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관련되는 제품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에 따른 에너지효율관리대상 기자재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1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로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성능에 대한 검사를 득한 제품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5. 법 제14조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제22조의2(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써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 가. 도서·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 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라.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마. 특정 공사용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 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제1항제3호 각목의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고시 제2011 - 24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5일

중 소 기 업 청 장

부 칙

1. 이 고시는 201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이 고시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2012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37호(2010. 11. 22)는 이를 폐지한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I. 총 칙

가. 목 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품의 분류 및 해석

① 제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제품명(용도, 소재 등 포함)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위) 및 수요처 규격
3. 세부품명
4.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5단위) 단, 제1호부터 제3호의 기준에 따른 분류를 보완하여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에 한한다.

② 제품의 해석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류번호 및 수요처규격 내에서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호의 분류번호 및 수요처규격이 부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제4호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는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직접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기타의 규정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운영한다.

II.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 120개 품목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제품명, 정부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및 산업분류번호는 상세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또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게재되어 있음.

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률정보 → 고시 → 2010년도

www.smpp.go.kr → 공지사항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

번호	제 품 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산업분류번호	비 고		
1	가구	44111907	게시판또는액세서리	25992 32021 32029 32091	※공공기관은 명확한 직접생산업체 선별을 위해 세부 품목 및 비교란에서 별도 구분한 기준에 따라 발주 ○(금속제이외), (금속제)구분		
		56101502	소파				
		56101507	책장				
		56111601	패널시스템용칸막이				
		56101515	침대				
		56101516	장롱				
		56101519	탁자				
		56101520	로커				
		56101530	캐비닛				
		56101531	신발장				
		56101543	식탁				
		56101702	파일링캐비닛또는액세서리				
		56101703	책상				
		56101706	회의용탁자				
		56101793	보조책상				
		56111902	산업용작업대				
		56112102	작업용의자				
		56112108	책상용콤비의자				
		56121002	카운터				
		56121009	경사진열람대				
		56121804	강사용책상				
		56121999	전시용진열대				
		56121998	수장고용수납장				
		56101701	크레덴자				
		52152299	조리대				
		56101538	찬장 (금속제)			25992 32021 32029 32091 28511	찬장 (금속제제외) 찬장 (취사용기구용에한함)
			찬장 (금속제제외)				
			찬장 (취사용기구용에한함)				

번호	제 품 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산업분류 번호	비 고
		56122001	실험대 (금속제에한함)	25992 32021 32029 32091	
			실험대 (금속제이외에한함)		
		56122002	실험실용보관장또는보조용품 (금속제에한함)	25992 32021 32029 32091	
			실험실용보관장또는보조용품 (금속제이외에한함)		
2	문	30171504	목재문	16221	
		30179998	목재문틀		
3	실내장식가구	72153606	사무용가구설치 (금속제에한함) 사무용가구설치 (금속제이외에한함)	25992 32021 32029 32091	
4	창	30171696	목재창	16221	
5	안내(표지)판	55121718	정보표지 [옥내안내(표지)판에한함]	33910	
			정보표지 [옥외안내(표지)판에한함]		
6	광고판	55121904	광고판	33910	
7	공기조화기	40101504	환기덤퍼	29172	
		40101709	공기조화기		
		40101902	제습기		
8	냉각탑	40101716	냉각탑	29171	
9	냉동기	40101710	왕복동식냉동기	29171	
		40101712	스크루냉동기		
10	대형냉장고	24131503	대형냉장고	29171	
11	무대장치	30221099	무대장치	29299	
12	송풍기	23990599	소음기	29173	
		40101504	환기덤퍼		
		40101601	송풍기		
13	약품투입기 (오존발생장치 제외)	47101505	염소처리장비	29175	
		47109960	약품투입기		
14	열교환장치	40101802	열교환기 (난방보일러외연결사용하는것은제외)	29176	
			열교환기 (난방보일러외연결사용하는것에한함)		
15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23181998	음식물쓰레기처리기	29299	

2012 계약심사 사례집

번호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산업분류번호	비고
16	응집기	47109992	응집기	29175	
17	일체형청정장비 (크린룸)	30201704	청정실	29172	
18	자외선살균기	47101517	자외선살균기	29175	
19	재활용품 자동선별기	24102298	압축기	29299	
20	크레인	24101602	호이스트	29169	
		24101690	지브크레인		
		24101691	천장크레인		
		24101678	갠트리크레인		
21	탈수및배수장치	47101525	탈수및배수장치 (수처리용에한함)	29175	
22	탈취기	40161692	탈취기 (수처리용에한함)	29175	
23	동상여과기	40161502	워터필터	29175	
		47109970	상향류식여과장치		
		47109972	섬유여과기		
24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정수,분뇨용, 배수,빗물 펌프장용 포함)	24101712	벨트컨베이어	29175	
		24101796	이동식컨베이어		
		24101714	에어컨베이어		
		24101722	체인컨베이어		
		24101730	스크루컨베이어		
		40161694	배연탈황기		
		40161701	원심분리기		
		47101501	활성탄장비		
		47101513	산소발생기		
		47109997	수중포기기		
		47101522	용수처리장치		
		47101536	슬러지수집기		
		47101542	부상분리장치		
		47109965	여과사인양기		
		47109976	경사판침강장치		
		47109995	거품제거기		
		47109998	스컴제거기		
47109978	협잡물처리기				

번호	제 품 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산업분류 번호	비 고
		47109979	드럼스크린		
		47109980	제진기 (농업용제외) 제진기 (농업용에한함)		
		47109987	평면스크린 (농업용제외) 평면스크린 (농업용에한함)		
		47109989	호퍼		
		47109990	염소가스중화장치		
		47109964	오수처리용산기장치		
		47109991	디스크스크린		
25	항온항습기	40101715	항온항습기	29172	
26	혼합기및교반기	47101512	혼합기및교반기 (수처리용에한함)	29175	
27	팬코일유닛	40101708	팬코일유닛	29172	
28	공기살균기	40161699	공기살균기	29174	
29	레이콘	30111505	레이콘	23322	
30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	아스팔트콘크리트	23991	
31	난간	30121703	난간 (알루미늄제에한함) 난간 (주물제품에한함)	25112 24311 24312	
32	창	30171698	금속제창 (알루미늄제에한함)	25111	
33	콘크리트 배수로	40141782	배수로 (철근콘크리트플룸관,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룸관, 콘크리트조립식배수로 에한함)	23326	
34	콘크리트벽돌	30131603	콘크리트벽돌	23325	
35	콘크리트블록	30131502	콘크리트블록	23325 23326	
36	맨홀박스	30121699	맨홀박스 (유리섬유복합관맨홀제외)	23326	
37	쓰레기통	47121702	쓰레기통또는쓰레기통라이너 (폴리에틸렌제품에한함) 쓰레기통또는쓰레기통라이너 (일반철물에한함)	22299 25112 25113 25932	
38	전선관	39131706	전선관 [폴리에틸렌(PE)관에한함] 전선관 [공압출염화비닐관(FC관), 경질비닐전선관에한함]	22211	

2012 계약심사 사례집

번호	제 품 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산업분류 번 호	비 고
39	폴리에틸렌 (PE)관	40142197	폴리에틸렌관 (가스용, 가교화폴리에틸렌관제외)	22211	
		40142393	폴리에틸렌제관이음		
40	폴리에틸렌제품	24112702	플라스틱팔릿	22299	
		24112404	상자		
		40141789	토목용폴리에틸렌구조물		
41	플라스틱자루	24111503	플라스틱자루 [폴리에틸렌(PE)봉투및포대에한함]	22212 22231	
			플라스틱자루 (P.P포대에한함)	13225	
42	폴리에틸렌필름	13111201	폴리에틸렌필름 (단, EVA 제외)	22212 22231	
		47121701	쓰레기봉투		
		30151899	방수시트		
43	F.R.P제품 및 SMC 포함 (참호는 합성수지제도 포함)	24111805	화학물질용탱크	22222 22223 22229	
		24111810	저수탱크		
		30171588	합성수지제문		
		30171695	합성수지제창		
		30179997	합성수지제문틀		
		30231602	이동식화장실		
		47101531	정화조		
		47101535	오수처리장비		
44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스템	46171610	보안용카메라	26421 26429	
		46161595	차량번호판독기 (주차및보안용에한함)		
45	수도미터	41112504	수량계 (수도미터에한함)	27214	
46	유량계	41112501	유량계 (유량계관련계측기기포함)	27214	
47	프로세스제어반	41112498	프로세스제어반 (상하수측정용계측기기포함)	27215 27216	
48	가드레일	30121793	가드레일(금속제에한함)	25112	
49	가로등주	39112001	조명타워 (철재및스테인레스제에한함)	25113	
		39111526	조명폴또는기둥및하드웨어 (철재및스테인레스제에한함)	25113	
			조명폴또는기둥및하드웨어 (주조제품에한함)	24311 24312	
50	강관	40142189	도복장강관 [PE도복강관(수도용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식강관은제외), 아스팔트도복 장강관(구경1,200mm이하)에한함]	24191	
51	조립식구조물 (금속제)	30201705	경비실	25112 25113	

번호	제 품 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산업분류 번호	비 고
		30231699	컨테이너하우스	25119	
		30201796	조립식구조물		
		30222003	버스정거장		
		30222064	자전거보관대		
52	방음판 및 방음벽(금속제)	30121787	방음벽및방음판	25113	
53	일반철물	30103201	스틸그레이팅	25112 25113 25932	
		30199994	건설용거푸집 (데크플레이트에한함)		
		47121703	입식재떨이및부품		
54	케이블트레이 (닥트카바 포함)	39131704	케이블트레이	25113	
55	파형관	40142123	파형관	24132 25112	
56	금속울타리용 철물	30152001	금속재울타리	25112	
		30121788	낙석방지책		
		31152001	면도날철조망		
57	스테인레스 물탱크	24111810	저수탱크	25122	
		24111897	온수탱크		
		24111898	응축수탱크		
58	농업용 관리기계	21101904	사료배합기	29210	
		23181506	세척장치 (농산물세척기에한함)		
59	수문	40141784	수문 (농업용수문은비,수문은물에 한하며, 수문1련당면적20㎡초과제외)	29210	
			수문 (동력및비동력수문밸브에한함)	29133	
		24101685	수문권양기	29210	
		24101676	가동보		
60	모터펌프 (발전용 및 LNG용 제외 단,농업용은 토출구경에 관계없이 포함)	40151503	원심펌프 (상수도용토출구경500mm이상제외)	29131	
		40151505	정량펌프		
		40151513	수중펌프 (배수펌프장및하수처리장용은 토출구경1,200mm초과제외)		
		40151517	오수용펌프 (수처리용제외)	29131	
			오수용펌프 (수처리용에한함)	29175	

2012 계약심사 사례집

번호	제 품 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산업분류 번호	비 고
		40151525	슬러지펌프	29131	
		40151546	축류펌프 (배수펌프장및하수처리장용은 토출구경1,200mm초과제외)		
		40151547	심정용펌프		
		40151553	모노펌프		
		40151586	자동펌프 (펌프모터일체형펌프에한함)		
		40151574	사류펌프 (배수펌프장및하수처리장용은 토출구경1,200mm초과제외)		
		40151566	부스타펌프		
61	교통신호등	46161504	교통신호등,교통신호제어기	28903	
62	도로표지병	46161585	도로표지병	25999	
63	도로표지판	55121718	도로표지판(금속표시판, 교통안전표지판)	25995	
64	세라믹기와	30151590	세라믹기와	23231	
65	타일	30131704	세라믹타일 및 판석	23232	
66	위생도기	30181504	세면기	23212	
		30181505	대변기		
		30181506	소변기		
67	각재	30103698	각재	16101	
		30121898	수목보호지주대 (목재에한함)		
68	판재	30103605	목재판재	16101 16102	
		30161501	벽판재 (목재에한함)		
		30161702	목재마루재		
69	밸브	40141620	버터플라이밸브	29133	
		40141694	제수밸브		
		40141688	체크밸브		
70	소방기	46191601	소방기 (소화전에한함)	29133	
			소방기 (소화기,포소화약제에한함)	29194	
71	보일러 및 구성품 (발전용과 가정용은 제외)	40101834	연소기 또는 버너	25121 25130 29150	
		40102001	연관보일러		
		40102002	수관보일러		
		40102095	간접가열보일러		
		40102094	폐열보일러		

번호	제 품 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산업분류 번 호	비 고
72	토목섬유	30121786	차수매트	13992 13994	
		30121702	토목섬유 (복합포, 토목용부직포에 한함)	13992 13994	
			토목섬유 [P.P섬유직포매트(PET제품포함)에 한함. 단, 복합매트제외]	13225	
73	부직포	11162201	건부직포섬유	13992	
		30122098	지반배수용구조재 (지반보강제제외)	13994	
74	폐기물 소각로(70ton/ 일이하)	47101529	소각로	29150	
		40101898	화장로		
75	석재	11111604	화강암	23911 23919	
		11111698	조경석 (조경석에 한함)		
		30131503	석재블록		
		30131702	석재타일및판석		
76	분사장비 및 약제	46191603	소방호스또는노즐	29194	
77	소방용방재장치	46191506	화재감식용기구	29194	
78	전광스코아판	49221501	스코어보드	33309	
79	체육공원시설 (근린공원이나 산책로에 고정 설치한 스포츠 시설)	49201612	운동시설물	33302	
		49241597	조합놀이대		
		49241596	조경시설물		
		49241511	퍼걸러		
80	승강기	24101682	덤웨어터	29162 29163	
		24101601	엘리베이터 (승객용은속도분속90M이하)		
		24101696	휠체어리프트		
81	씽크대	52151650	가정용개수대	25994 32021	
		52152299	조리대		
		56101538	찬장 (씽크대벽장에 한함)		
		48102099	주방기기용받침대 (가스대, 복합취사대에 한함)		
82	여과기	25221363	디젤동차용윤활유여과기	29174 29175	
		25221417	디젤기관차용연료필터		
		25221418	디젤동차용연료필터		
		25221646	디젤기관차용윤활유여과기		
		26101726	오일여과장치		

2012 계약심사 사례집

번호	제 품 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산업분류번호	비 고
		40161503	집진기		
		40161505	공기여과기(에어필터)		
83	PVC관 (염화비닐관)	40142185	경질폴리염화비닐관 (일반용, 수도용에한함)	22211	
		40142396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주철제제외)		
84	철근콘크리트관 (원심력제품)	40142109	콘크리트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원심력 유공철근콘크리트관에한함)	23326	
85	콘크리트파일	30102802	콘크리트파일 (PHC파일에한함)	23326	
86	계장(계측) 제어장치	39121189	계장제어장치 (통합감시제어설비포함, 일일처리 능력으로하. 폐수는10만톤, 상수는 30만톤이하의수처리설비에한함)	28122	
87	자동제어반	39121801	자동제어장치	28122	
88	수도계량기 보호통	40141786	수도 계량기 보호통	38302	
89	개폐기	39121105	개 폐 장치 (기공설치용SF6가스개폐기에한함)	28121	
90	무정전전원장치 (UPS)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생산용량500KVA이하에한함)	28119	
91	발전기	26111601	디젤발전기 (2,000KW초과및해상용, 방음형은 제외)	28111	
92	배전반	39121101	분전반	28122	
		39121103	배전반 (중압감시반, 154KV, 354KV용보호 배전반포함)		
		39121104	모터컨트롤센터		
93	변압기	39121002	전력변압기 (25.8KV-Y이하지상변압기, 25.8KV-Y이하주상변압기, 철도용 단권변압기에한함)	28112	
		39121001	배전용변압기 (건식변압기 중 몰드변압기는 3,000KVA이하)		
94	애자	39122182	애자 (내오손용결합, 지지라인포스트, 저압인류, 36,000Lbs이하 현수)	23213	
95	충전장치	26111704	배터리충전기 [충전장치(충전기)에한함]	28119	
96	경관조명기구 (광섬유, LED용 및 제어장치 포함)	39111704	투광조명	28422	○(건물조명), (건물조명 이외) 구분
		39111606	수중조명등	28423	
		39111605	정원 또는 공원등	28122	
		39112102	LED조명	28429	
97	형광등기구	39111501	형광등기구	28113	

번호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산업분류번호	비고
	(LED용 기구 포함)	39111801	등안정기	28422 28423 28429	
		39111515	다운라이트설비		
		39112102	LED조명		
98	비닐 절연전선	26121524	절연전선및피복선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 전선,450/750V일반용단심비닐절연 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OW,인입용 비닐절연전선DV에한함)	28302	
99	강심알미늄연선	26121519	알루미늄선 (강심알미늄연선에한함.ACSR-OC를 포함하며,AW류는제외)	28302	
100	전기용연선	26121522	나선 (전기용경동연선,전기용연동 연선에한함)	28302	
101	제어케이블	26121603	제어케이블	28302	
102	실물,모형	60109899	실물,모형(전시용영상, 특수효과장치 및 과학전시물 포함)	33934	
103	방송장치, 구내	45111705	대중방송용장비	26521 26529	
104	유·무선원격 제어장치	43221521	원격접속장치 (유·무선원격제어장치)	27211 27215	
105	전광판	55121903	전광판	28423	
		46161582	교통정보전광판		
106	열차행선안내장치	25250325	열차행선안내장치 (기존장치의개·보수용에한함)	31202	
107	점토벽돌	30131602	세라믹벽돌 (미장벽돌,점토바닥벽돌에한함)	23231	
108	다중화장치	43222822	시분할다중화장치	26410	
		43222695	다중통신장비		
		43221898	광다중화장치		
109	전화,교환기 네트워크 연결장치	43221501	자동안내시스템	26410	
		43222818	배선반		
		43222696	동보장치		
110	취사용기구 (가정용 제외)	48101818	주방기구소독기	28511	
		48101615	상업용식기세척기		
		48101530	상업용밥솥		
		23181506	세척장치 (세미기에한함)		
		48101511	상업용그리들(부침기)		
		48101521	상업용레인지 (가스레인지,중화식레인지에한함)		

2012 계약심사 사례집

번호	제 품 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산업분류번호	비 고
		48101896	상업용주방후드		
		48102097	배식대		
111	가로등기구 (LED용 및 제어장치 포함)	39101614	메탈할라이드등	28422 28410 28113	
		39101617	고압나트륨등		
		39111603	도로조명설비		
		39112102	LED조명		
		39111608	거주로조명설비		
		39111801	등안정기 (컨버터포함)		
		39111527	태양광조명설비		
112	자동점멸기	39121107	조명제어장치 (자동점멸기,LED용포함)	28122 28429	
113	주물제품	30121695	맨홀뚜껑 (철개에한함)	24311 24312	
		30121698	맨홀보조물		
		30121791	교량받침(교좌장치)		
		31163299	압륜		
114	주차장치	24101687	자동차주차장치	29162 29163	
		30221002	주차구조물		
		24101689	주차관제장치		
115	철근콘크리트관	40142109	철근콘크리트관 (진동및롤전압콘크리트관에한함)	23326	
116	돌망태	31163403	돌망태	25943	
117	철망	30111801	용접철망	25943	
118	페인트	31211501	에나멜페인트	20421	
		31211593	방청페인트		
		31211599	특수페인트		
		31211803	페인트용희석제및세척제(시너)		
119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30131514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23326	
120	고무발포단열재	40101872	고무발포단열재	22199	

7. 도내 공사용 자재생산업체 현황

(2012. 6월말)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주 생 산 품	연 락 처	비고
가로등주					
서평전기공업㈜	목포시 공단중앙로	안효선	가로등주	062-943-3120	
㈜태흥	여주시 율촌면	정원일	가로등주	644-9000	
㈜원일테크	순천시 해룡면	신종민	가로등주	726-0086	
㈜파루	순천시 서 면	강문식	태양광가로등주	755-5114	
㈜파루	순천시 서 면	강문식	LED가로등기구	755-5114	
㈜엡스코어	나주동수농공단지	장동환	태양광가로등주	333-5995	
㈜뉴그린코리아	나주동수농공단지	배문자	가로등주	062-941-4646	
㈜연일	나주시 노안면	윤애선	가로등주	331-4566	
㈜원진이엔씨	보성군 미력면	정양표	가로등주	852-5520	
㈜서경	화순군 동농공길	서경찬	가로등주	371-0043	
청명아트홀	화순군 능주면	한광수	가로등주	373-9297	
㈜글로벌 에스엠티	화순군 이양면	황진수	가로등주	791-1204	
㈜대흥가로등	화순군 능주면	한상현	가로등주	371-3300	
㈜미래로드	화순군 도곡면	김용성	가로등주	375-7866	
라온조영	화순군 능주면	김지운	가로등주	371-1035	
㈜삼영이엔지	화순군 화순읍	김성아	태양광가로등주	375-0997	
㈜아트산업	해남군 옥천면	서미라	가로등주	532-4842	
㈜미로	영암군 군서면	최병술	가로등주	471-7397	
㈜케이씨전자	함평군 월야면	문성재	가로등주	322-7400	
LED경관조명기구					
㈜원일테크	순천시 해룡면	신종민	LED경관조명기구	726-0086	
㈜엡스코어	나주동수농공단지	장동환	LED경관조명기구	333-5995	
LED다운라이트					
㈜이엘텍	나주시 노안로	박평서	LED다운라이트	334-3933	
㈜파루	순천시 서 면	강문식	LED다운라이트	755-5114	
㈜그린조명	구례군 간전면	김우진	LED다운라이트	781-6500	
강 관					
㈜호남스틸	순천시 서 면	김철신	파형강관	754-4900	
㈜세경엔지니어링	순천시 해룡면	이상중	강 관	724-0430	
㈜스틸플라워	순천시 해룡면	김병권	강 관	900-3000	

2012 계약심사 사례집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주 생 산 품	연 락 처	비고
㈜씨엠테크	순천시 해룡면	이학원	강 관	684-5501	
부국철강㈜	순천시 서 면	남상규	강 관	751-0303	
에스티티㈜	순천시 해룡면	위신량	강 관	724-8989	
㈜픽슨	광양시 옥곡면	정성만	파형강관	760-7625	
(주)서해금속산업	담양군 금성면	서명호	파형강관	383-0434	
동원철강㈜	보성군 미력면	김지훈	파형강관	852-9988	
(유)오솔라	보성군 미력면	김지훈	철판형 강류	6909-4956	
공기순환기					
(유)세진이엔씨	목포시 연산동	노연택	공기순환기	245-6351	
환경이엔스피	담양군 대전면	송준영	공기순환기	381-1133	
교량난간 낙석방지책					
㈜해성	목포공단중앙로	김가원	교량난간, 낙석방지책	02-1588-2811	
(유)모든아트	목포공단중앙로	마영식	낙석방지책	283-9117	
㈜호남엠엔씨	순천시 주암면	정문옥	교량난간	755-5977	
㈜전일산업	담양군 무정면	채종선	교량난간	383-8680	
㈜한길산업	화순군 화순읍	송영한	교량난간	062-944-9123	
주한산업 (주)	고흥군 봉래면	김순옥	낙석방지책	062-513-8090	
두룬산업개발(주)	해남군 북일면	이재홍	교량난간, 낙석방지책	062-943-4245	
교통신호등					
(유)옵토피아	나주시 봉황면	김영희	신호등, 제어기	337-9633	
기 와					
해룡기와	순천시 별량면	이춘형	시멘트기와	742-9002	
대한한옥개발(주)	담양군 용 면	이명철	합성수지기와(천년와)	383-0227	
㈜동부요업	구례군 간전면	박문환	한식기와	781-0987	
이레콘텍	보성군 화천면	김유식	한식기와(열처리, 코팅기와)	011-328-7567	
㈜한라기와	보성군 조성면	정형채	한식기와	858-8558	
무등기와	화순군 도곡면	한석창	시멘트기와	062-941-1999	
탐진기와	강진군 칠량면	박기남	한식기와	433-2345	
중앙산업	강진군 성전면	윤백금	기와, 벽돌	434-2078	
원표기와공장	영암군 학산면	김인안	시멘트기와	473-5303	
대우기와	함평군 학교면	성인창	시멘트기와	322-6200	
디젤발전기					
㈜선테크	순천시 조례동	이선휴	비상발전기	721-2222	
모정, 파고라, 목재					
(유)휴먼테크	목포시 연산동	김지선	파고라, 운동시설	285-1700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주 생 산 품	연 락 처	비고
(유)형후	목포시 공단중앙로, 여수문수북5길	김종식	파고라, 운동시설	242-0915	
(주)명선조경체육산업	나주시 송월동	박채준	파고라, 운동시설	334-1284	
우진기업(주)	화순군 능주면	김택수	모정, 운동시설	373-8211	
(주)풍경원	장성군 장성읍	김수민	모정, 운동시설	062-956-0380	
목포임산물	목포시 산정동	강성원	목재	245-2625	
광산목재(주)	목포시 산정동	박청웅	목재	243-5711	
(주)동현건설	여수시 여서동	진양기	합성목재	062-514-5068	
(유)에이치케이우드	순천시 주암면	박상호	합성목재	755-5977	
순천목재산업	순천시 벌량면	임덕기	목재	742-5707	
상한에이텍	나주시 금천면	김인수	목재	333-4010	
(주)광일목재	나주시 남평읍	오승현	목재	331-8566	
대명목재산업	나주시 노안면	서재일	목재	332-0088	
현대제재소	나주시 다시면	장진선	목재	335-1227	
(주)용성제재소	나주시 남평읍	양해동	목재	334-2612	
삼일목재(주)	나주시 금천면	송장열	목재	331-8778	
고려한옥(주)	광양시 봉강면	손두형	목재	763-8061	
방산제재소	담양군 무정면	장택수	목재	381-1610	
금성제재소	담양군 담양읍	손덕용	목재	382-0932	
태일목재(주)	담양군 창평면	김현선	목재	381-2003	
강산우드	담양군 담양읍	양정환	합성목재	374-0804	
십일시제재소	보성군 보성읍	안영기	표면가공목재	9809-04496	
구원목재재산업	구례군 구례읍	황현성	목재	783-9191	
(주)죽산목재산업	보성군 보성읍	안진선	목재	853-5521	
삼일종합목재(주)	화순군 능주면	김진태	목재	373-6836	
(주)토방하우징	화순군 도곡면	한진수	목재	373-4760	
삼양제재소	강진군 군동면	박동원	목재	434-5118	
(주)이너스	강진군 칠량면	최미경	얼바우	433-7720	
인산제재소	해남군 해남읍	김동익	목재	536-2709	
황산제재소	해남군 황산면	조진희	목재	532-3550	
장성제재소	해남군 마산면	임철균	목재	535-5165	
금덕제재소	영암군 금정면	황용태	목재	471-3862	
영암제재소	영암군 영암읍	박순옥	목재	471-1633	
대성목재	영암군 삼호읍	박정서	목재	464-3005	
세원목재(주)	영암군 삼호읍	홍기오	목재	463-9800	

2012 계약심사 사례집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주 생 산 품	연 락 처	비고
㈜법송목재	무안군 청계면	허 준	목재	454-0488	
(유)창영목재	무안군 일로읍	김금수	목재	281-4378	
(유)대림목재	무안군 일로읍	박송갑	목재	281-6611	
㈜행복홈우드테크	무안군 청계면	최대운 외1	방부목재	454-6300	
㈜영진합성목재	무안군 청계면	최성남	합성목재	454-9025	
동원제재소	함평군 함평읍	최용우	목재	323-2334	
이우드코리아	영광군 영광읍	이근식	합성목재	02-446-0347	
㈜NM친환경건설	신안군 지도읍	김정철	합성목재	062-611-8818	
무정전전원장치					
보영파워테크㈜	영광군 백수로길	임병선	무정전전원장치	062-973-1717	
물탱크					
은우산업	여주시 화양면	최희선	물탱크	762-2193	
㈜DS ENG	순천시 해룡면	김영철	물탱크	727-0224	
해동㈜	담양군 금성면	한동옥	물탱크	383-1434	
㈜영일FRP산업	화순군 동 면	김춘식	물탱크	372-6851	
㈜삼원테크	화순군 동 면	황대연	물탱크	373-3221	
㈜광명기업	완도군 완도읍	최흥기	물탱크	554-6402	
세보금속스텐㈜	장성군 동화면	박웅기	물탱크	395-4551	
보일러					
㈜약산	담양군 금성면	이형일	보일러(화목)	018-602-9101	
㈜유니온보일러	장흥군 장흥읍	김종배	보일러(화목)	010-5652-5544	
벽돌, 블록, 돌망태					
효창철망㈜	나주시 동수동	박종혁	매트리스형 돌망태	336-2115	
㈜삼부기업	나주시 세지면	강대석	황토벽돌	337-3488	
KC세라믹	나주시 봉황면	김형실 외1	점토벽돌	331-9000	
황토산업	나주시 봉황면	최은경 외1	황토벽돌	010-4631-0127	
광양콘크리트	광양시 광양읍	정순용 외1	황토벽돌	763-3636	
㈜대양콘크리트	담양군 금성면	정 일	벽돌, 블록	383-5211	
이레콘텍	담양군 창평면	이영례	벽돌, 블록	383-8220	
대광블럭	곡성군 오곡면	김창권	벽돌, 블럭, 콘크리트타일	362-2000	
㈜부성리싸이클링	곡성군 석곡면	김성제	고무블럭, 매트	363-8050	
㈜금호에코텍	곡성군 곡성읍	조영선	콘크리트 블록	363-8050	
㈜대양그린텍	곡성군 고달면	최석주	콘크리트 블록	363-6255	
㈜한성산업	구례군 광의면	이상표	주차장 잔디블럭	782-3651	
성호산업㈜	구례군 간전면	하성호	자연석형 호안블럭	781-7001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주 생 산 품	연 락 처	비 고
(유)새천년한옥	보성군 미력면	이광우	황토벽돌	853-3440	
이조흙건축	보성군 조성면	이기열 외1	벽체(전통외역기)	858-5356	
㈜삼한	화순군 동 면	최규범	매트리스형 돌망태		
벽산좋은 흙	화순군 동 면	오순기	벽돌, 바닥재	371-6633	
㈜에코환경테크	화순군 동 면	김영희	호안블럭, 벽돌	371-0228	
화순황토산업㈜	화순군 한천면	정옥민	황토벽돌, 바닥재	372-9954	
남강황토세라믹	화순군 한천면	김남준	황토벽돌	374-9100	
㈜생명산업	화순군 한천면	정옥민	벽돌, 블록	372-9954	
대성산업	화순군 이양면	김기성 외1	호안블럭, 벽돌	373-4488	
㈜삼광산업	장흥군 관산읍	방철배	벽돌, 콘크리트타일	867-7700	
㈜관산산업	장흥군 관산읍	지점만	벽돌, 콘크리트타일	867-2777	
윤택산업	강진군 강진읍	임윤택	벽돌, 블록	433-6600	
중앙건업	강진군 강진읍	박연수	벽돌, 블록	434-2078	
대신산업	강진군 성전면	박종호	벽돌, 블록	433-8982	
마량블럭	강진군 마량면	김원균	벽돌, 블록	433-7821	
붉은덕 황토산업	해남군 마산면	이이림	황토블럭	535-0803	
제일산업	영암군 영암읍	김선애	벽돌, 블록	464-2288	
㈜글라이맥스 제이엔	영암군 시종면	차정만 외1	황토미장재, 흙타설재, 흙벽돌	472-5176	
㈜신기소일텍	무안군 청계면	김응수	황토흙포장	010-3646-3828	
무안지역자활센터	무안군 일로읍	박경준	황토벽돌	452-6225	
황도현	무안군 현경면	최삼중	황토벽돌	454-5450	
㈜국일판널	무안군 청계면	윤순옥	황토벽돌, 창호	452-5750	
희망산업	무안군 청계면	양 광	콘크리트블록, 호안블럭	453-3701	
무안황토벽돌	무안군 해제면	최옥수	황토벽돌	453-3645	
㈜에코닉스	함평군 함평읍	김갑중	콘크리트 블록	322-8001	
주포산업㈜	함평군 함평읍	곽정순	콘크리트 블록	322-1766	
㈜맑은환경	함평군 함평읍	최동식	콘크리트 블록	323-3797	
문장그린텍	함평군 해보면	박래옥	콘크리트 블록	323-3000	
선우황토벽돌	장성군 남 면	김준호	황토벽돌, 적벽돌	011-611-4612	
석 재					
(유)강남석재산업	순천시 황진면	정영길	보차도용 경계석	755-8823	
㈜봉황산업개발	나주시 봉황면	김계동	조경석	333-3055	
담양석재산업㈜	담양군 무정면	김승철	조경석	383-0241	
(유)창조산업	곡성군 석곡면	오봉순	조경석	362-1911	
삼승석재(재)	보성군 득량면	최성규	조경석, 맥반석	853-0036	

2012 계약심사 사례집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주 생 산 품	연 락 처	비고
청궁석산	화순군 동 면	유재경	조경석	011-4629-2808	
㈜신아	함평군 해보면	정현석	조경석	323-2240	
장성개발㈜	장성군 북하면	유기연	조경석	392-5871	
섬유매트					
㈜테라조경	나주시 동수농공단지	기희용	식생매트, 비점비점오염제조	332-6721	
㈜에코피아	담양군 담양읍	나항도	앵커매트	381-2422	
아이엔지산업	담양군 창평면	최경열	앵커매트	382-1446	
㈜에코랜드	담양군 담양읍	나인숙	친환경식생매트		
㈜에코닉스	함평군 함평읍	김갑중	앵커매트	062-352-7001	
수도계량기보호통					
㈜유화글로벌	나주동수농공단지	이경남	수도계량기보호통	333-1345	
㈜대덕미터텍	해남군 옥천면	방병철	수도계량기보호통	536-9832	
수문권양기/문비/문틀					
덕성이엔지㈜	여수시 소라면	임미영	수문권양기, 문비	655-1210	
(유)신안산업개발	신안군 비금면	문용희	수문권양기, 문비	245-5524	
㈜우승산업	나주시 봉황면	장경남	수문권양기, 문비	337-8338	
㈜덕유	곡성군 곡성읍	김춘자	수문권양기, 문비	062-943-9031	
하서산업㈜	화순군 동 면	김상필 외1	수문권양기, 문비	371-0144	
㈜광명기업	완도군 완도읍	최홍기	수문권양기, 문비	062-942-6402	
㈜연일	나주시 노안면	윤애선	수문권양기, 문비	331-4566	
유일정공㈜	화순군 동 면	주정애	수문권양기, 문비	371-4255	
광희엔지니어링㈜	화순군 도곡면	봉하근(명)	수문권양기, 문비	371-8113	
㈜동우시스템	화순군 도곡면	문인호	수문권양기, 문비	371-5856	
㈜태성기계	화순군 도곡면	김동옥	수문권양기, 문비	371-0886	
㈜두산청공	신안군 비금면	손근영	수문권양기, 문비	462-0601	
㈜대호중공업	화순군 동 면	권경섭	수문권양기, 문비	371-1104	
수위조절기					
서흥이엔지㈜	구례군 간전면	김 진	수위조절기	062-961-6883	
오수정화조					
다인환경테크㈜	보성군 미력면	이철환	정화조	852-1888	
㈜21세기 환경	화순군 동 면	김남순	정화조	373-3323	
㈜대진환경산업	화순군 능주면	이병노	정화조	373-7116	
㈜장호	화순군 동 면	강대권	정화조	371-6061	
오륜기업㈜	화순군 동 면	박희영	정화조	371-5100	
㈜후소엔지니어링	화순군 춘양면	이경섭	정화조	373-5373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주 생 산 품	연 락 처	비고
울타리,철망,스틸그레이팅					
더펜스	여주시 소라면	김기태	용접철망, 매쉬웬스	681-7402	
㈜현대철망웬스	순천시 인월동	김동웅	매시형 울타리	741-8084	
대양철망공업사	나주시 산포면	영세환	매시형 울타리	337-4747	
㈜전일산업	담양군 무정면	채종선	디자인형 울타리	383-8680	
벌교철망	보성군 벌교읍	서정수	철망	858-1114	
㈜그린아트산업	보성군 보성읍	최규용	디자인형 울타리	945-0036	
㈜상한	화순군 동 면	최규범	매시형, 디자인형, 용접철망	372-8887	
㈜부국철망	화순군 동 면	김외수	용접철망	373-5051	
(주)한길산업	화순군 화순읍	송영관	창살형 울타리	062-944-9123	
장흥철망	장흥군 장흥읍	김경희	용접철망	863-7762	
강진철망	강진군 강진읍	김정란	철망	433-0938	
두륜산업개발㈜	해남군 북일면	이재홍	매시형, 창살형	062-943-4245	
㈜태영철망	영암군 상호읍	고영희	용접철망	462-7474	
(유)목포철망	무안군 일로읍	진길만	용접철망, 매쉬웬스	284-9018	
㈜금강스틸	함평군 학교읍	조성균	용접철망	462-7474	
㈜옥당철강	영광군 군서면	정유신	철망, 수문	351-8600	
대성기업	영광군 군서면	유홍열	PE스틸그레이팅, 배수로	353-0063	
(유)도로산업	영광군 군서면	김시오	울타리, 철망	1588-2811	
㈜광암스틸	장성군 동화면	조재희	철망, 수문	393-6997	
㈜한아	장성군 황룡면	배초환	스틸그레이팅	394-3267	
㈜상성철망	완도군 완도읍	양인욱	매시형, 디자인형, 스텝그레이팅	062-956-8700	
완도철망	완도군 완도읍	박성춘	철망, 웬스	552-7081	
염소투입기					
은우산업	여주시 화양면	최희선	염소투입기	762-2193	
㈜해동	담양군 금성면	한동욱	염소투입기	383-4978	
㈜현진기업	담양군 무정공단길	임용택	염소투입기	062-972-8235	
JD	영암군 상호읍	양재열	염소투입기	462-7125	
인조잔디					
㈜지앤지스포츠	영암군 영암읍	허영복	인조잔디	471-7155	
창 호					
㈜뫼마루엔시스멤목창호	목포시 옥암동	김승호	한식 창호	011-635-0372	
부국산업건설㈜	목포시 원산로	임달빈	알루미늄, 철제 창호	278-2848	
㈜한성산업	목포시 삼학로	오영진	알루미늄, 철제 창호	062-375-8522	
(유)한국메탈	목포시 공단중앙로	전금숙	알루미늄, 철제 창호	278-3831	

2012 계약심사 사례집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주 생 산 품	연 락 처	비고
형제창호	여수시 연등동	이창조	목재 창호	642-0705	
상록수건구	순천시 별량면	이춘형	목재 창호	742-7529	
㈜동수건설	순천시 백강로	김화영	알루미늄, 철제 창호	725-8503	
㈜이노탑	화순군 동 면	유진중 외1	알루미늄, 철제 창호	373-6920	
삼곡공예	화순군 도암면	이을채	목재 창호	010-5630-0966	
㈜성원엔지니어링	장흥군 장흥읍	고성수	알루미늄, 철제 창호	062-572-6355	
㈜혁신	해남군 옥천면	최연호	알루미늄, 철제 창호	462-5948	
㈜정보산업	장성군 장성읍	조성근	알루미늄, 철제 창호	394-3530	
콘크리트 맨홀					
㈜대부	나주시 봉황면	정길주	하수도용	337-8777	
거보산업㈜	담양군 금성면	양 훈	하수도용	383-0330	
㈜남양산업	화순군 이양면	이봉권	하수도용	371-2030	
(유)광전피씨	영암군 군서면	이정석	하수도용	473-2502	
㈜에코엠앤씨	함평군 함평읍	김갑중	하수도용	323-0000	
태양광발전장치					
서평전기공업㈜	목포시 공단중앙로	안호선	태양광발전장치	062-943-3120	
파루㈜	순천시 서 면	강문식	태양광발전장치	755-5114	
㈜정우엔지니어링	담양군 월산면	김재일	태양광발전장치	062-268-5118	
㈜건국	나주시 박정길	김명옥	태양광발전장치	062-361-3927	
에이스테크	광양시 정산길	임군택	태양광발전장치	791-6055	
㈜탑인프라솔라	영암군 신북면	오형석	태양광발전장치	062-961-9877	
㈜우원산업	장성군 장성읍	최성주	태양광발전장치	393-3220	
금산전력㈜	화순군 이양면	송병우	태양광발전장치	062-603-4141	
㈜신호엔지니어링	광양시 중 동	임수연	태양광발전장치	795-8477	
㈜세진엔지니어링	영암군 덕진면		태양광발전장치	384-6333	
㈜탑선	장성군 동화면	윤정택	태양광발전장치	399-1500	
포 장 재					
(유)대진건설	목포시 산정동	김창석	미끄럼방지포장	273-0908	
㈜신서남산업	목포시 연산동	이은주	탄성포장	273-1028	
㈜포스텐	여수시 봉계동	김상신	미끄럼방지, 황토포장	062-227-5600	
그린로드㈜	여수시 화양면	고용배	탄성포장	692-3565	
㈜신우산업	순천시 주암면	이병도	미끄럼방지포장	742-0759	
㈜신우산업	순천시 주암면	이병도	탄성포장	742-0759	
㈜영도산업개발	순천시 연향동	손병선	황토포장	722-1209	
㈜대해에코텍	광양시 중 동	이교순	미끄럼방지포장	062-603-2085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주 생 산 품	연 락 처	비고
㈜드림로드	광양시 태인동	김 인	탄성포장	908-9988	
㈜제철세라믹	광양시 태인동	오명환	황토포장	791-1850	
㈜에코피아	담양군 담양읍	나항도	미끄럼방지포장	381-2422	
㈜성진산업	구례군 간전면	임채욱	탄성포장, 황토포장	724-6384	
㈜참슬산업	고흥군 남양면	김 영	황토포장	763-7045	
㈜해븐	장흥군 관산읍	하성호	미끄럼방지, 탄성포장	867-8426	
세창건설산업	강진군 도암면	김현채	미끄럼방지포장	062-265-8517	
대라㈜	강진군 강진읍	오동식	황토포장	432-8134	
㈜태웅산업	해남군 옥천면	신철균	미끄럼방지포장	062-571-2557	
성산기업㈜	영암군 영암읍	김원오	미끄럼방지포장	471-7705	
㈜에이로드	장성군 장성읍	정진종	탄성포장	070-7716-4379	
폴리에틸렌구조물					
㈜명성화학	여수시 화양면	고용배	PE이중벽관	692-3565	
보성폴리테크㈜	순천시 남정동	김성식	PE하수관거	857-9900	
㈜스트롱케미칼	순천시 주암면	김종원	PE이중벽관	755-9300	
㈜서원	나주시 동수동	박봉선	PE이중벽관	336-4005	
㈜제철공우	광양시 옥곡면	안우정	PE이중벽관	790-5137	
태성산업(유)	담양군 대덕면	나성근	PE하수관	381-4177	
호남화학	담양군 무정면	박남호	PE하수관	382-6525	
(유)금성산업	담양군 월산면	김용주	PE하수관	381-5447	
㈜보성포리테크	보성군 벌교읍	김성식	PE삼중벽관	857-9990	
대림프라스틱㈜	장흥군 장평면	박재일	PE이중벽관	862-0880	
(주)대원폴리	함평군 학교면	박찬근	PE이중벽관	323-0011	
㈜드림파이프	영광군 군서면	장미희	PE이중벽관, 다중벽관	353-7722	
㈜파이프로	영광군 군서면	이승용	PE수도관, 하수도관	351-0230	
㈜창일	장성군 북일면	김재영	PE이중벽관	394-8773	
㈜디에스텍	완도군 완도읍	양지영	PE관, PVC	554-8085	

* 한옥자재 생산업체는 행복마을과 자료

8. 계약심사 관련 추천 사이트

추천 사이트	주 소	내 용
건설계약연구원	http://www.csr.co.kr	노임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확인가능
한국건설 신기술협회	http://www.kcnet.or.kr	분야·공종별 신기술 현황 파악
서울외국환 중개(주)	http://www.smbs.biz	주요 통화기준을 확인
환 경 부	http://www.me.go.kr/ →정보 마당→고시·훈령·예규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및 동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폐기물 종류 용어설명, 분리대상 등
대한건설 순환자원협회	http://www.koras.org	품목별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운반수집 비용 단가
한국원가 관리협회	http://www.kcaa.or.kr	전국 원가분석기관 현황 및 원가분석 실무자료 확인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표준품셈 등), 건설기계 경비 산출표 등
한국은행	http://www.bok.or.kr	기업경영분석자료 - 업종별 자기 자본비율, 유동비율, 이익률 등